

세법연구 15 - 09

# 민관협력사업 과세체계 국제비교 연구

2015. 12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전 병 목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원

정 훈 공인회계사

신 영 효 위촉연구원

# 목 차

I. 서론	7
II.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10
1. 민관협력사업의 일반론	10
가. 민관협력사업의 정의 및 배경	10
나. 민관협력사업의 효과	12
2.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13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률 및 지침	13
나.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15
다. 민간투자사업 현황	19
3. 우리나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22
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전 배경 및 정의	22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구조	24
다. 사회성과연계채권 현황	25
4.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29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29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과세체계	40
III. 국외의 민관협력사업 사례 및 과세체계	45
1. 국제기구의 관점	45
가. 세계은행(World Bank)	45
나. 국제연합(United Nation)	46
2. 영국	47

가. 민간투자사업	47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53
3. 미국	56
가. 민간투자사업	56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63
4. 호주	66
가. 민간투자사업	66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72
5. 일본	74
가. 민간투자사업	74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78
IV. 국제비교	80
1. 민간투자사업 과세체계 비교	80
2. 사회성과연계채권 과세체계 비교	84
V. 시사점	86
1. 세제혜택의 쟁점 및 필요성	86
가. 민간투자사업과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쟁점	86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91
다.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	94
2. 과세의 합리화 유도	95
가.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	95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	101
참고문헌	107

## 표목차

〈표 II-1〉 주요 PPP의 정의	11
〈표 II-2〉 수익형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비교	17
〈표 II-3〉 민간투자사업 현황(추진방식 및 대상시설)	20
〈표 II-4〉 서울시 SIB 성과 모델(안)	27
〈표 II-5〉 경기도 SIB 성과 모델(안)	28
〈표 II-6〉 기본계획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담금 및 조세 감면	32
〈표 II-7〉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주주차입금 현황	38
〈표 II-8〉 후순위차입금 관련 진행현황	39
〈표 III-1〉 영국의 PFI 현황	48
〈표 III-2〉 소득(자산)의 분류 예시	51
〈표 III-3〉 미국 민관협력사업 유형	58
〈표 III-4〉 호주 민간투자사업 예시	67
〈표 III-5〉 일본의 SIB사업	79
〈표 IV-1〉 민간투자사업의 비교	81
〈표 IV-2〉 국제기구의 PPP 세제혜택 예시	82
〈표 IV-3〉 PPP 과세쟁점의 비교	83
〈표 IV-4〉 기타 국가의 민간투자사업 세제혜택	84
〈표 IV-5〉 SIB의 비교	85
〈표 V-1〉 민간투자사업(과세)과 정부대행단체(면세)의 비교	102
〈표 V-2〉 민간투자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104

## 그림목차

[그림 II -1] 민자사업 수익구조.....	16
[그림 II -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19
[그림 II -3] 민간투자사업 총투자규모 및 사업수 추이.....	21
[그림 II -4] BTL한도액 및 BTO 협약체결액, 연도별 실시협약 체결건수.....	22
[그림 II -5] SIB의 기본적인 구조.....	25
[그림 II -6] 서울시 SIB 구조.....	27
[그림 II -7] 민간투자사업 과세대상 거래.....	29
[그림 III -1] 연도별 금융약정이 체결된 프로젝트 건수 및 자본조달액.....	47
[그림 III -2] 일본의 PFI 현황(2015년 9월 30일 현재).....	75

# I. 서론

- 현재 많은 국가들이 경제침체와 재정건전성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정책과 더불어 재정정책의 실행이 요구되나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이의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국가부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을 대신할 민간투자도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건전성 불안은 크게 세수 축소와 재정지출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함
  - 민간은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더욱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민간투자가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하나의 경기활성화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점에서는 민간투자와 동일하나 투자대상을 기존에 정부가 주로 수행하였던 분야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 정부는 민간의 효율성·효과성을 공공부문에 이끌어내어 정부가 수행했을 때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공공투자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부담시킬 수 있음
  -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과 동시에 일부 PPP는 정부가 부외부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일반적인 민간투자보다 경제 파급력이 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또 다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장기간 저금리로 인해 민간에 유휴자금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발표<sup>1)</sup>,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sup>2)</sup> 개최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추진을 밝히고 있으며 서울~문산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sup>3)</sup>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도 사회간접자본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한정된 재정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sup>4)</sup>
  
-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건설에 기반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벗어나 공익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PPP(service PPP)도 도입되고 있음
  - 서울시, 경기도 등은 아동복지시설 교육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에 민간의 투자 및 운영을 사회성과 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형태인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이러한 PPP사업을 도모함에 있어 과세체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PPP사업의 활성화 여부는 적정한 대상사업의 선정, 이에 대한 금융조달, 사업구조에 대한 제도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그러나 조세는 민간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PPP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점검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2015. 4. 7.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민간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민자사업 추진키로」, 2015. 10. 22.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본격 추진하기로」, 2015. 5. 14.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로 민간투자 확대로 경제활성화 지원」, 2016. 2. 21.

-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SIB를 대상으로 함
- PPP에 대한 과세체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관련 제도에 관한 법률, 자금조달의 방법인 금융, 정부의 행정 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필요한 사항이거나 과세체계에 연계되는 사항만을 검토함

## II. 민관협력사업의 현황

### 1. 민관협력사업의 일반론

#### 가. 민관협력사업의 정의 및 배경

-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대해 통용되는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공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을 의미함
  - 세계은행(WorldBank: WB)의 PPPIRC(PPP in Infrastructure Resource Center)는 PPP Knowledge Lab을 인용하여 “민간과 정부 간의 장기계약으로 공공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은 유의적인 위험과 운영책임을 부담하면서 성과에 연계된 보수를 향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sup>5)</sup>
    - 정부자금조달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서비스약정 또는 일괄공급(turnkey)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제한을 두는 민영화는 PPP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PPP를 “민간이 정부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민간은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병행하고, 상당한 위험을 민간에 이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부와 민간 간의 약정”으로 정의함

---

5) Worldbank PPPIRC(<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 검색일자: 2016. 3. 14.).

〈표 II-1〉 주요 PPP의 정의

주요기관	PPP 정의
WorldBank	민간과 정부 간의 장기계약으로 공공자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은 유의적인 위험과 운영책임을 부담하고, 성과에 연계된 보수를 향유하는 것
OECD	민간이 정부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민간은 이윤추구라는 목적을 병행하고, 상당한 위험을 민간에 이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부와 민간 간의 약정
IMF	전통적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면서 민간의 운영과 자금조달에 더하여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투자가 이루어지며 유의적인 위험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되는 약정
EC	관련 당국과 민간이 사회간접자본과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자금조달, 건설, 개량,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협력의 형태
Standard & Poors	정책적 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기술, 전문성, 금융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민간과 정부 간의 중장기 협력
European Investment Bank	공공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의 민간과 정부 간 구성된 협력관계

자료: OEC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2008, p. 17.

- PPP는 현대에 들어 생겨난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현대 정부의 예산제약 등의 사유로 인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sup>6)</sup>
  - 증거에 따르면 1977년 센강의 수자원을 파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15년 기간 동안 컨세션이 페리에 형제에게 부여되었다고 함
  - 이후 현재 각 국가들은 국가별 상황에 부합하는 각기 다른 형태의 PPP를 수행해 오고 있음
  
- 현대 PPP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초에는 운송부문에 집중되었으나, 이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각국의 투자에서 그 비중이 커져 왔음<sup>7)</sup>
  - 공항,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등이 PPP의 다수를 차지하며 이외에 수처리, 교육 및 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교정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음
  - 영국은 최초에 예산제약 없이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의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6) Deborrah A. Demasi & Kenneth B. Weiner, *International Project Financing*, 4th edition, Juris, 2012, p. 350.

7) OEC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2008, p. 28.

위해 시작하여<sup>8)</sup>, 전체 공공투자의 10~15%에 이를 정도로 많은 PPP가 이루어져 왔음

## 나. 민관협력사업의 효과<sup>9)</sup>

- PPP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위험을 민간에 이전하면서 민간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임
  - 민간부문의 기술과 혁신을 향상된 운영 효율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음
  - 민간부문이 적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함
  - 사회간접자본 등의 비용을 확정하여 예산의 불확실성을 제거함
  - 국내 기업을 거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도록 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
  - 관련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의 측면에서 국가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경제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음
  - 제한된 공공부문 능력을 보충하면서 증대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음
  - 적절한 위험을 민간부문에 이전함으로써 장기 적격성(Value-for-Money: VFM)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반면에, PPP는 정부의 위험을 민간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정보 비대칭, 민간의 이윤추구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개발, 입찰 및 협상 등의 비용이 전통적 정부조달사업에 비해 높을 수 있음
    - 이러한 비용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정당화 여부를 위해 VFM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자금조달에 대한 원가가 존재하며 민간은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에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함<sup>10)</sup>

8) UNECE, "Introduction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2, p. 5.

9) WorldBank PPPIRC(<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 검색일자: 2016. 3. 4.).

10) 이는 사회적 편익과 재무성 분석의 현금흐름(또는 수익성)의 개념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s)이 커서 비용편익(benefit-cost)이 양호하더라도, 사업의 재무상 현금흐름이 낮고 다른 지원이 없다면 PPP로 진행되기 어렵다.

- 현금흐름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정부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함
- 일부 사업은 미국달러 등의 기축통화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축소될 수 있음
  - 항구나 공항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음
- 특정 사업은 민간부문에 업무 이양을 기피하는 경향 등이 존재하여 정치적·사회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
-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대수준 또는 특정 기대는 민간이 아닌 정부에 요구하게 되므로 정부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부담함
- 민간은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정부와 민간 간의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사업의 경우 모든 우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움

## 2.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률 및 지침

- 우리나라는 1994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제도가 시행됨
  - 「민자유치촉진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의 절차와 방법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sup>11)</sup>
  -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전에도 민간투자사업은 시행되었으나 일부 SOC시설에 한

1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개정이유, 1994. 8. 3.

해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고, 실적도 크지 않았음<sup>12)</sup>

- 정부는 1998년 12월 「민자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함으로써 추진성과가 부진한 PPP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함<sup>13)</sup>
  - 법의 제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추진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 사업시행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또는 소유·수익하는 등 사용료 징수 허용,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기존 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범위와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투융자회사 개편, 제도의 보완을 수행하여 이후 몇 차례 개정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sup>14)</sup>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를 산업기반시설에서 교육·복지시설 분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 개선효과를 도모함
    - －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등에 민간투자사업 적용이 가능해짐
  - 새로운 사업방식인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도입함
    -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정부의 시설임대료 및 부대사업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이처럼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근거법률이며,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는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방법·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그

12)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 1, p.11.

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정·개정이유, 1998. 12. 31.

1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정·개정이유, 2005. 1. 27.

밖의 관련 정책사항이 포함됨

## 나.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 1)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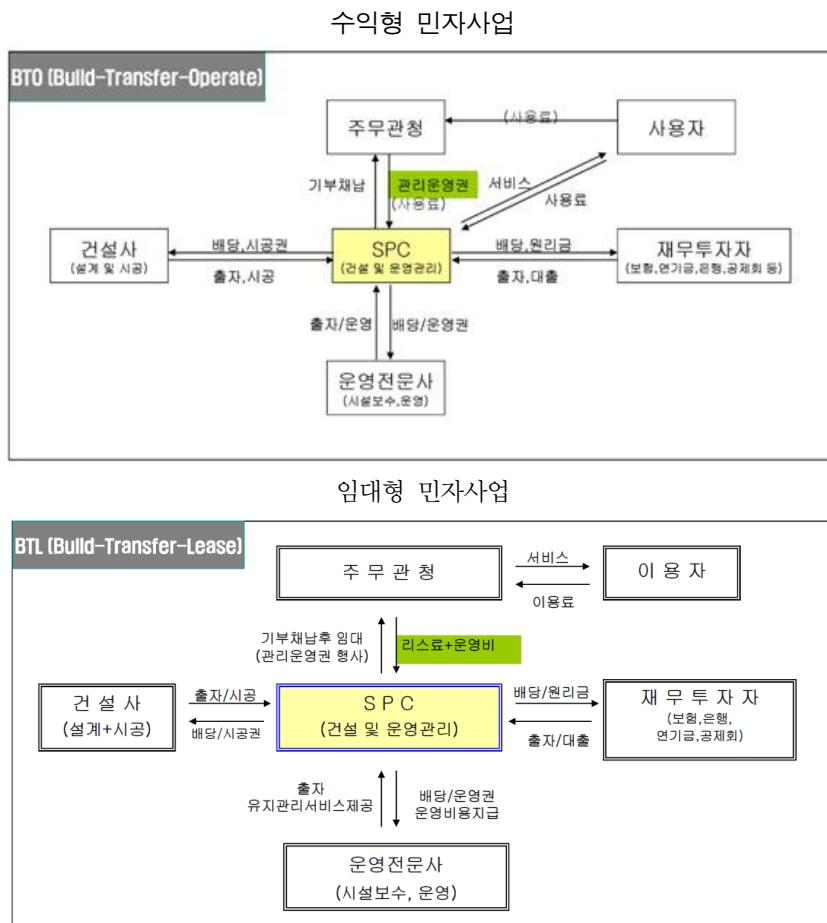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라 BTO, BTL, BOT, BOO, BLT 등 다양한 추진방식이 있음<sup>15)</sup>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Own-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BLT(Build-Lease-Transfer)은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전하는 방식
  - 이외에 위의 방식을 혼합하여 설계한 혼합형 방식 등이 존재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 BOT, BOO 등)과 임대형 민자

15)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조, 2015. 4. 20.

사업(BTL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익형 민자사업의 대표적인 방식은 'BTO',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표적 방식은 'BTL'이라 할 수 있음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걷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에 많이 이용됨
- 임대형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인정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사업시설을 정부에 임대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학교, 군 관사, 하수관거, 문화시설 등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시설에 이용되고 있음

[그림 II-1] 민자사업 수익구조



자료: 교보생명,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이해」, 2010, pp. 9~10.

- BTO방식과 BTL방식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수요위험의 부담을 민간이 부담하는지 여부임
  - BTO방식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지만, BTL방식은 정부로부터 시설임대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수요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표 II-2〉 수익형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비교

구분	수익형 민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투자비 회수	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대상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독립채산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주요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 관사, 하수관거, 문화·복지시설
사업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음(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사업추진방식	BTO, BOT, BOO 등	BTL 등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 1, p. 68, 재구성.

- 최근에 정부는 BTO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사업위험을 분담하여 사업수익률과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식인 BTO-rs(위험분담형)와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초과이익 발생시 공유)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을 도입함<sup>16)17)</sup>
    - 2006년에 민간제안사업, 2009년에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이 폐지된 이후 BTO사업이 침체되자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16)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015. 4. 8., p. 7.

17)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3조 및 제33조의2, 2015. 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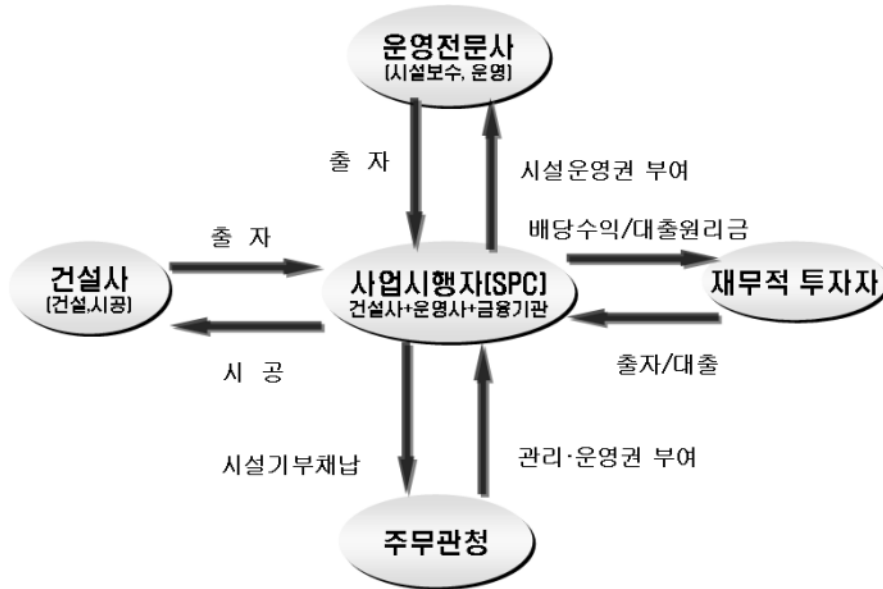
## 2) 추진주체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되며, 수익형 민자사업 및 임대형 민자사업 모두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가능함
  - 기존에는 수익형 민자사업만 민간제안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모든 민자사업에 민간제안이 가능해짐
  
-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하려면 수익자부담능력 원칙, 수익성원칙, 사업편익의 원칙, 효율성 원칙을 고려해야 함<sup>18)</sup>
  - 기존 이용시설에 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수익자부담능력 원칙),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와 정부 지원 가능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수익성 원칙)이어야 함
  - 또한 정부가 추진하면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 건설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사업편익의 원칙)이나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서비스질 제공 등이 기대되는 사업(효율성 원칙)임을 고려해 지정해야 함
  
-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아래 그림과 같은 정부와 민간의 약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참여자는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함<sup>19)</sup>
  - 사업시행자는 주로 설계사, 건설사, 운영사,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됨
  -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하면 이를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구조임

18)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4조, 2015. 4. 20.

19)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5), p. 73.

[그림 II-2]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및 역할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p. 73.

### 다. 민간투자사업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 말까지 총 633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총투자비는 93조 3,213 억원, 총사업비는 73조 9,324억원에 달함<sup>20)</sup>
  - 사업수 기준, 수익형 민자사업은 총 210개로 BTO가 가장 많은 200개를 차지하고 BOO는 7개, BOT는 3개이며, 임대형 민자사업은 BTL방식이 423개 추진되었음
  - 추진방식별 총투자비(총사업비)는 BTO 64조 5,105억원(49조 1,067억원), BOO 1조 2,627억원(9,966억원), BOT 6,230억원(5,160억원), BTL 26조 9,251억원(23조 3,131 억원)임
  - 대상시설별로 구분했을 때 사업수 기준으로는 교육(194개), 환경(164개), 국방(71개), 도로(56개), 문화관광(32개) 등의 순임
    - 총투자비 기준으로는 도로(38조 6,180억원), 철도(17조 3,364억원), 환경(11조 6,861억원), 교육(8조 707억원), 항만(6조 2,836억원) 등의 순으로 추진되고 있음

20)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74~76면.

- 사업당 평균투자비가 가장 큰 사업은 철도(1조 3,336억원)시설이며, 도로(6,896억원), 항만(3,696억원), 유통(2,152억원)시설도 평균투자비가 큰 수준임

〈표 II-3〉 민간투자사업 현황(추진방식 및 대상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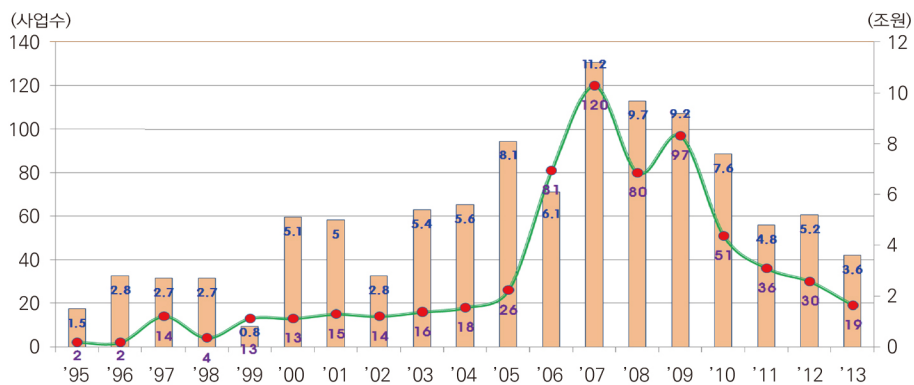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총사업비	총투자비	비중		
BTO	도로	56	28.00	293,713	386,180	59.86	6,896
	철도	9	4.50	100,160	133,065	20.63	14,785
	항만	17	8.50	43,845	62,836	9.74	3,696
	환경	72	36.00	41,620	49,996	7.75	704
	공항	14	7.00	6,671	7,673	1.19	548
	* 주차장	26	13.00	2,926	3,156	0.49	121
	정보통신	1	0.50	1,004	1,004	0.16	1,004
	문화관광	4	2.00	942	1,000	0.16	250
	* 대학교	1	0.50	186	195	0.03	195
	소계	200	100.00	491,067	645,105	100.00	3,242
BOO	유통	5	71.43	7,261	9,773	77.40	1,955
	문화관광	2	28.57	2,706	2,854	22.60	1,427
	소계	7	100.00	9,966	12,627	100.00	1,804
BOT	유통	1	33.33	2,621	3,141	50.42	3,141
	문화관광	1	33.33	1,526	1,863	29.90	1,863
	* 과학관	1	33.33	1,013	1,226	19.68	1,226
	소계	3	100.00	5,160	6,230	100.00	2,077
BTL	교육	194	45.86	75,447	80,707	29.97	416
	환경	92	21.75	55,717	66,865	24.83	727
	국방	71	16.78	48,573	55,753	20.71	785
	철도	4	0.95	30,573	40,299	14.97	10,075
	* 대학교	15	3.55	8,472	9,431	3.50	629
	문화관광	25	5.90	7,582	8,508	3.16	340
	정보통신	3	0.71	1,969	2,394	0.89	598
	복지시설	10	2.36	2,061	2,343	0.87	234
	복합시설	4	0.95	1,724	1,837	0.68	459
	* 과학관	5	1.20	1,013	1,115	0.41	223
소계	423	100.00	233,131	269,251	100.00	635	
합계	633	-	739,324	933,213	-	1,474	

자료: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p. 77.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평균은 21.2년이었으며, 추진방식별로는 BOT 와 BOO 방식이 30년, BTO 24.2년, BTL 19.6년 순이었음<sup>21)</sup>
  - 사업수 기준으로 11~20년이 508개로 가장 많았고 21~30년(84개), 1~10년(19개), 30년 이상(17개) 순으로 나타남
  - 추진주체별로는 국가가 24년으로 가장 길었고, 국가보조지자체 21년, 지자체 19.9년 순이었음
  - 발주방식별로는 민간제안이 24년으로 정부고시사업인 20.7년보다 더 길게 설정되고 있었음
  
-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후 2000년 중반까지 사업수 및 투자비가 해마다 증가했으나 2007년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9년 민간제안방식과 MRG가 도입되며, 이후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투자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2007년부터는 총투자비 및 평균투자비 규모가 감소되고 있음<sup>22)</sup>
    - 2007년부터 BTL한도액과 BTO 실시협약 체결액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건수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3] 민간투자사업 총투자규모 및 사업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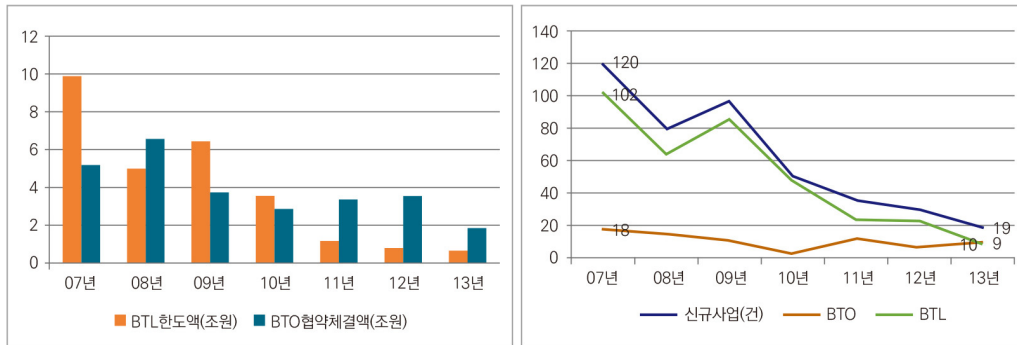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2015), p. 2.

21)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p. 95.

22)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pp. 72~73.

[그림 II-4] BTL한도액 및 BTO 협약체결액, 연도별 실시협약 체결건수



자료: 기획재정부(2015), p. 3.

- 민간투자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는 위험증가와 수익성 악화, 대상시설의 제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sup>23)</sup>
  - － MRG 폐지, 금융환경의 악화로 인해 사업위험이 증가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도한 경쟁 및 수익성 악화, 창의적인 민간제안 한계, 여론의 부정적 인식 등을 사유로 들고 있음

### 3. 우리나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 가.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전 배경 및 정의

##### 1) 발전 배경

- 최근 들어 기존의 건설에 기반한 PPP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부문에 민간의 투자 및 운영을 적용하는 방식이 고안되고 있음
  - 이는 2007년 영국에서 막대한 공공서비스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적 사업의 자금조달 방법을 고려하던 중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에 사용되는 우발적 수익채권

23) 기획재정부(2015), p. 3.

에서 착안하여 시작하게 됨<sup>24)</sup>

- 이후 영국은 2010년 최초의 SIB사업인 피터버러교회화사업을 실행함

- 이후 SIB는 세계 각국 정부의 관심을 받으며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방법에 비해 성과중심적이며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sup>25)</sup>
  - 정부는 가장 큰 사회적 서비스 구매자이면서 지출에 따른 효과의 극대화를 원하는 데 SIB는 전통적 방법에 비해 이를 더욱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전통적 방법은 각 개입(intervention)<sup>26)</sup>별로 자금이 지출되는 데 반해 SIB에서는 결과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져 성과의 향상과 개입에 대한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 또한 SIB는 개입 당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측정 시기까지 이연되므로 예산 제약이 존재하는 정부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 정의

- SIB는 다음 네 가지 특성으로 설명되나<sup>27)</sup>, 여러 형태로 발전되면서 현재 실행중인 SIB는 이 중 일부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함
  - 정부와 법적으로 별도 실체인 운영기관과의 약정임
  - 사전에 설정된 수준의 사회적 성과가 달성되면 운영기관은 정부로부터 대가를 수취함
  - 최소한 하나 이상의 투자자가 정부 또는 운영기관과는 별도의 실체로 존재함
  -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금융위험(투자회수 불가능에 대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는 투자자에게 귀속됨
- SIB의 명칭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이지만 채권의 특성을 가지지 않아 채권이 아닌 것으로

24) Center for Social Impact Bonds([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sib-history](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sib-history), 검색일자: 2015. 12. 31.).

25)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Established under the UK's presidency of the G8), *Impact Investment: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 15 September 2014, p. 15.

26) 사회적 서비스공급 등을 의미한다.

27) Center for Social Impact Bonds([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sib-definition](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sib-definition)).

로 보는 것이 통설임

- 일반적으로 채권의 특성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고 채무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가격(이자율 또는 할인율)이 결정되지만, SIB는 사업성과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므로 채권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채권, 투자계약, 복합금융상품, 파생결합증권<sup>28)</sup>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함<sup>29)30)</sup>

##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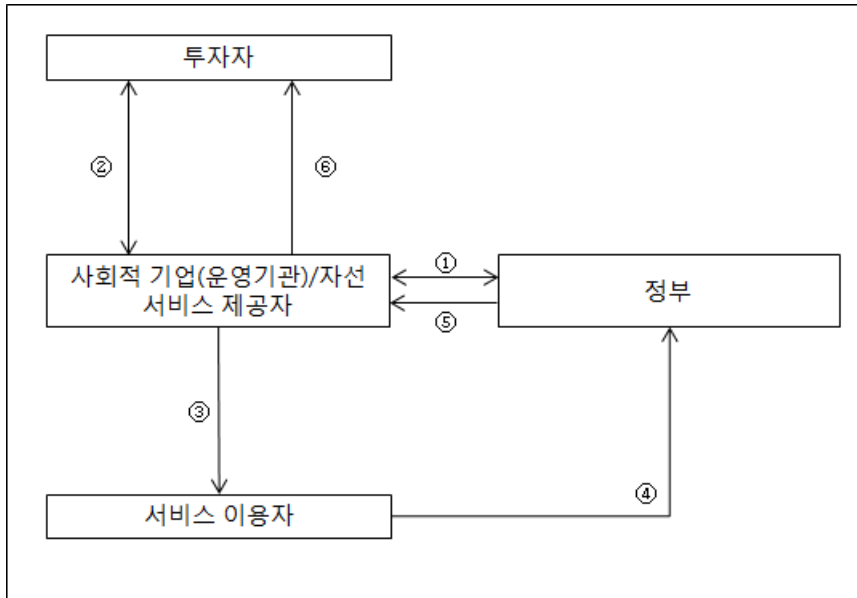
- SIB의 기본적인 구성주체는 서비스구매자(정부), 운영기관, 투자자로 나누어짐
  - 정부는 운영기관과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결과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을 체결함
  - 운영기관은 투자자와 투자약정(SIB)을 체결하고 자금을 공급받아 사업비로 사용하여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함
    - 실제로는 별도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정부는 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함
    - 실제로는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적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결과를 평가함

28)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 7., p. 12.

29) 이재광 · 서상목 · 문진수 · 강선영,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방안」,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09. 12., p. 63.

30) 이재광 외(2013)에서는 ‘특수채권’ 또는 ‘특수조건부 채권’으로 보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하나, 특수채권은 상법·자본시장법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며, 실제 서울시 SIB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으로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정에 따라 SIB가 투자원금에 대한 금액 없이, 성과에 따른 과실(즉, 이자)만이 변동되는 계약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림 II -5] SIB의 기본적인 구조



- 주: ① 정부와 운영기관은 서비스 성과가 달성되면 운영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PbR: payment by results)  
 ② 운영기관은 투자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서비스 성과에 따른 지급을 약정함  
 ③ 운영기관(자선서비스 제공자)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④ 서비스 이용자에게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정부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짐  
 ⑤ 정부는 서비스 성과가 달성되면 사전 약정에 따라 예산을 운영기관에 지급함  
 ⑥ 운영기관은 정부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함

자료: Center for Social Impact Bonds([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knowledge-box](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knowledge-box)).

#### 다. 사회성과연계채권 현황

- 우리나라의 SIB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2건이 진행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 10월 21일 ‘아동교육 SIB사업’에 대해 운영기관을 팬임팩트코리아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함<sup>31)</sup>
    - 2016년 3월 현재 팬임팩트코리아는 투자자 및 수행기관을 모집 중에 있음
  -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탈수급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SIB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5년 12월 22일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한 상태임<sup>32)</sup>

31)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협약 체결」, 2015. 10. 22.

## 1) 서울시 S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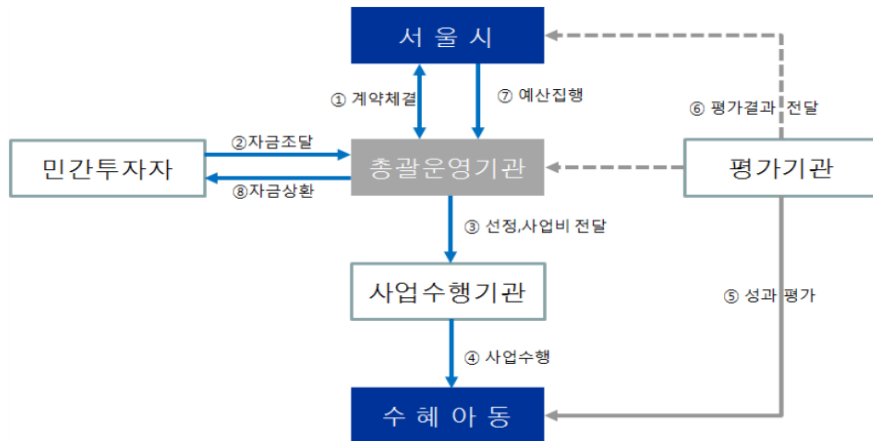
- 서울시 SIB는 서울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적능력 향상과 사회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임
  - 서울시는 SIB사업을 위해 2014년에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의회는 2015년 4월 23일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을 가결함<sup>32)</sup>
    - 2014년 9월에 동일한 SIB사업 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음
  - 서울시는 팬임팩트코리아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시 아동 그룹홈 내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에게 개입함으로써 수급자 편입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sup>34)</sup>
    - 이러한 목표를 위해 심리치료 및 정서 회복, 사회성 발달, 인지능력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2016년 2월 운영기관이 선정되어 투자자 모집 중인 단계로 향후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를 수행할 제3의 기관을 모집할 예정임

32) 경기도 공고 2015-1275호, 「해봄」 프로젝트(경기도 SIB방식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5. 12. 22.

33)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보상계약(정부와 운영기관 간의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4)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 소개 및 사례』, 2016. 1, pp. 26~28.

[그림 II-6] 서울시 SIB 구조



자료: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협약 체결」, 2015.10.22., p. 2.

- 서울시와 운영기관이 체결한 협약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투자원금 손실 부담이 부여되어 있음
  - 투자자로부터 모집 예정인 사업비는 약 11.1억원이며 최대 성과목표인 대상 중 42% 이상의 지적능력과 사회성 향상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반대로 최저기준은 31%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함

<표 II-4> 서울시 SIB 성과 모델(안)

성공인원비율	원금 대비 수익률(3년합계)	비고(수식)
10% 이하	(-)100%	원금 100% 손실
10% 초과 31% 이하	(-)68.8%~(-)3.1%	$(100 \div 32) \times \text{성공인원비율} - 100$
31% 초과 33% 이하	0%	BEP기준점 = 32% ±1%는 기준점에 포함
33% 초과 42% 미만	3.1%~30%	$(100 \div 32) \times \text{성공인원비율} - 100$
42% 이상	30%	수익상한 연 10%

자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검토 보고서』, 2015. 4., p. 17.

## 2) 경기도 SIB

- 경기도의 SIB인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함<sup>35)</sup>
  - 경기도는 SIB사업을 위해 2015년에 근거 조례인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근로의지가 있거나 환경 변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립의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임
  - 현재 운영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선정단계에 있음
  
- 경기도 SIB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투자원금 손실 부담이 부여되는 것으로 공고되어 있음<sup>36)</sup>
  - 총사업비는 약 18.7억원으로 최대 지급가능 인센티브인 2.2억원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투자금은 인센티브와 평가비 1억원을 제외한 15.5억원으로, 탈수급률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최대금액은 탈수급률 20%일 경우 2.2억원임
    - 연 환산 시 최대 연간 6.8%의 수익률을 달성
  - 반면에, 탈수급률이 11% 이하인 경우 원금이 감액됨

〈표 II-5〉 경기도 SIB 성과 모델(안)

성공인원비율	지급률	비고
11% 이하	0~91.3%	성과달성률에 따라 원금 차등지원
12%	원금의 100%	투자원금 100% 지급
13% 이상 20% 이하	원금+성과보상금(1~10%)	성공인원 1% 증가시 성과보상금 1.4%씩 추가 지급

자료: 경기도 공고 2015-1275호, 「해봄」프로젝트(경기도 SIB방식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운영기관 모집 공고, 2015. 12. 22., p. 3.

35) 위의 경기도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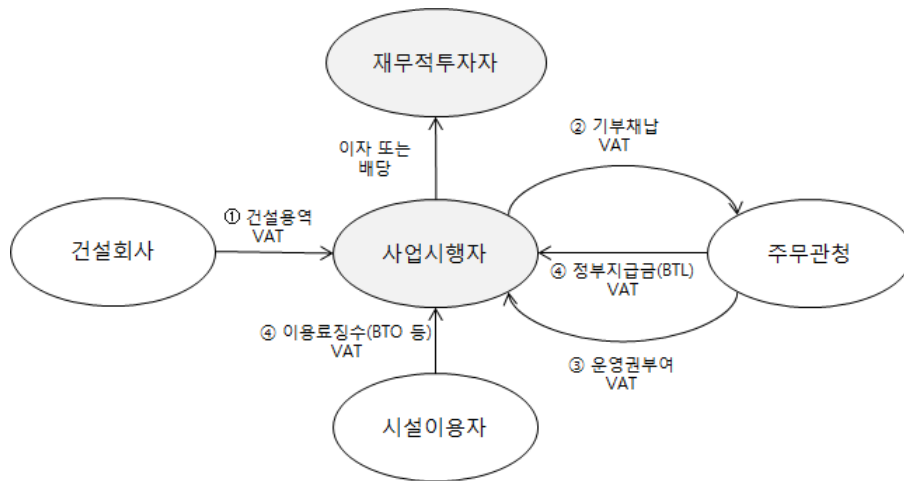
36) 위의 경기도 공고.

#### 4.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 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는 건설, 준공, 운영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등이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법인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인 경우 면세)가 과세되며, 투자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과세됨

[그림 II-7] 민간투자사업 과세대상 거래



- 주: 1. 회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연구대상이 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자임  
 2. 번호로 되어 있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따라 과세, 면세, 영세율 적용이 달라짐

- 본 절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단계별로 세법상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살펴봄

## 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 정부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투자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고 있음
  - 「민간투자법」 및 「기본계획」(제137조)은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하며, 세제혜택은 각 개별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규정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에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이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동 채권의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sup>37)</sup>
    - 이전에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집합기구의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 1억 원까지는 5%, 초과금액은 14% 분리과세하였으나 2012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됨
  - 국가,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가 BTO, BTL, BOT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의 건설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sup>38)</sup>
    -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함
  - 공공부문 중 도로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40% 이상 공동으로 출자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sup>39)</sup>

3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38)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및 제3의2호.

3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0호.

-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000만달러 이상으로 새로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함<sup>40)</sup>
  
- 「법인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에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허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가 있음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함<sup>41)</sup>
  -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할 수 있음<sup>42)</sup>
    - －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련 자산의 실현시 익금에 산입
  - 사업시행자가 도관요건(BTL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BTL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업무·자금관리업무 위탁 등)을 구비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sup>43)</sup>
    - － BTL은 발기인 요건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국민연금관리공단도 가능함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함<sup>44)</sup>
  
- 「지방세법」에 따른 세제혜택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취득세 중과 등의 예외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정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함<sup>45)</sup>

4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41)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42)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4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1호.

4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45)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sup>46)</sup>

□ 조세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법」 제56조 및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sup>47)</sup>

〈표 II-6〉 기본계획에서 기술하고 있는 부담금 및 조세 감면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농지법시행령 제52조 및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7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분리세율을 적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마목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	-

46)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47) 「농지법시행령」 제52조,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표 II-6〉의 계속

관련 규정	감면 내용	비 고
법인세법 제35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	-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6항 제3호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 산입	-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 다목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8 제1항제3호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	-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1호	사업시행자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한 명목투자회사 요건(임대형 민자사업 이외의 사업시행법인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시행법인은 최소자기자본금 10억원 이상)을 구비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부대사업 포함)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할 경우 취득세 증가에 대한 예외 인정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

주: 기본계획상 열거된 조세감면은 모든 조세감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2013. 5. 10.일자  
개정 반영된 것이어서 일몰기간 등에 대해 수정함.  
자료: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9], 2015. 4. 20., 일부 수정.

## 2) 민간투자사업 단계별 세법상 주요 쟁점

### 가) 건설단계

- 부가가치세법상 건설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짐
  -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데 이 경우 과세사업자 여부는 건설용역에 따른 기부채납이 아닌 운영기간에 대한 사업의 과세 여부임<sup>48)</sup>
    - 기부채납 후 도로·항만·공항 등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설단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철도·폐기물처리·군 관사 등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 이러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근거는 건설·기부채납·운영이 거래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임
  -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과세사업 조건을 규정하기 이전<sup>49)</sup>에는 동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었음<sup>50)</sup>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에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해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질의회신<sup>51)</sup>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건설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조기환급 대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규정하고 있어<sup>52)</sup> 건설

48) 조세심판원 2012. 4. 4. 2012서0165 결정, 2012. 3. 21. 2012서532 결정, 부가가치세과-20, 2010. 1. 6. 등.

49)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5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 26681 판결.

51) 질의회신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2004. 12. 30.

5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단계의 시설은 건설 중인 것이어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제한 것으로 추정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의 기성잔금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봄<sup>53)</sup>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총투자비의 확정 등에 따라 공사대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준공시점이 아닌 공사비 정산에 대한 최종합의 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 나) 기부채납단계

- 기부채납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sup>54)</sup>
  - 다만, 면세사업을 수행할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행위는 면세임<sup>55)</sup>
- 부가가치세법상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시 BTO, BTL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임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은 기부채납행위가 아닌 관리운영권 설정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대상시설의 준공 및 관리운영권 등록 이후에 총투자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임<sup>56)</sup>
    - 과세관청은 이와는 다르게 준공 및 기부채납 시를 공급시기로 보고 총투자비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sup>57)</sup>

53) 조세심판원 2011. 12. 19. 2011광1399 결정, 국세청 2012. 02. 13. 2011-0143 결정 등.

5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8.

55) 국세심판원 2015. 10. 27. 2005전1310 결정.

56) 조세심판원 2013. 9. 26. 2013광1427 결정, 2015. 2. 23. 2013중2506 결정 등.

- 부가가치세법상 기부채납 시 공급가액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함<sup>58)</sup>
  - 따라서 실시협약상 총투자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대상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인 총투자비, 재무제표상 장부가액, 시가와는 다른 금액임
    - 사업시행자가 수령한 건설보조금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며<sup>59)</sup>, 기부채납 시가 아닌 건설보조금 수령 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부채납 시 공급가액에 포함함<sup>60)</sup>

#### 다) 운영단계

- 부가가치세법상 BTL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sup>61)</sup>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됨<sup>62)</sup>
  -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이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이므로 수익금액 중 임대료에 대해서는 명세서제출 의무가 존재함
  - 다만 이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2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로 인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sup>63)</sup>
    - 1심 재판부는 BTL의 임대료는 협약에 의한 산정방식이나 정부부담을 분산하는 취지로 볼 때, 실질적으로 재정도금융역에 대한 장기분할금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명세서미제출가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sup>64)</sup>
- 부가가치세법상 주무관청은 기부채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도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57) 법규부가 2010-28, 2010. 3. 18. 및 여타 위의 불복사건에서도 동일함.

5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

59) 법규과-724, 2014. 7. 10., 국세심판원 2007. 1. 15. 2006중1142 결정 등.

60) 법규부가 2010-306, 2010. 10. 28.,

61)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

62) 조세심판원 2015. 3. 31. 2015부1151 결정, 2013. 4. 19. 2013중0344 결정, 국세청 2014. 12. 5. 심사-부가 2014-0133 결정 등.

63) 서울고등법원 2015누58203(진행중인 사건).

64) 인천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50867 판결.

- 부동산임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더라도 면세되지 않으므로<sup>65)</sup>,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운영권 부여를 부동산으로 보아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sup>66)</sup>
    - 다만, 기부채납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이 아닐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대상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임<sup>67)</sup>
  - 그러나 이에 따라 모든 주무관청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sup>68)</sup>
  - 이때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이나, 공급시기의 특례<sup>69)</sup>를 적용하여 기부채납 및 기부채납 관련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sup>70)</sup>
    - 이는 BOT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치가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공급하는 것임<sup>71)</sup>
  - 다만, 주무관청 등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sup>72)</sup>
- 법인세법상 가장 큰 쟁점은 BTO 사업시행자의 후순위(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산입 문제임
- 2011년 감사원에서 민자사업의 후순위주주차입금 등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는 감사처분요구<sup>73)</sup>를 함에 따라 쟁점이 대두됨
    - 후순위차입금은 일반적인 차입금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게 설정되며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있는데, 이러한 후순위차입금투자자가 사업시

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66) 조세심판원 2014. 11. 20. 2014중4240 결정, 부가가치세과-183, 2011. 2. 25., 부가-21766, 2015. 01. 25.

67) 부가가치세과-565, 2012. 05. 18.

68) 이종윤·김남용, 『민간투자사업 Hand Book』, 북랩, 2014, p. 228.

6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70) 법규부가 2012-203, 2012. 06. 28.

71) 부가가치세과-1029, 2013. 10. 31.

72) 법규부가 2010-306, 2010. 10. 28.

73)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2011. 5. pp. 36~39.

행자의 주주여서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표 II-7〉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주주차입금 현황

(단위: 억원, %)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자)	주주차입금				당좌대출이자 초과 이자율
		구분	약정액	약정일	이자율 <sup>1)</sup>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후순위	2,144	2004.1.15	13.9	4.9
2	우면산터널 (우면산인프라웨이주식회사)	후순위	266	2008.12.	20.0	11
3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식회사)	후순위	195	2005.2.16.	20.0	11
4	문학터널 (문학개발주식회사)	구분없음	499	1999.12.3.	13.1	4.06
5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후순위	3,038	2005.5.20	6~20	0~11
6	대구부산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후순위	5,972	2008.11.28.	12~40	0~31
7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	선순위	1,420	2004.10.24.	10.0	1
		후순위	400	2003.3	15~20	6~11
8	범물안심간도로 (대구동부순환도로주식회사)	후순위	377	2007.3.17.	17.0	8
9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	후순위	291	2008.12.22.	7~65	0~56
10	목포신외항1-1 (목포신항만주식회사)	후순위	202	2009.6.30	7.5~27.4	0~18.4
11	목포신외항1-2 (제2목포신항만주식회사)	후순위	112	2009.6.30.	8.5~11	0~2
12	일산대교 (일산대교주식회사)	후순위	361	2009.12.28.	6~20	0~11
	합계		15,277			

주: 1)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최저 6%에서 최고 65%까지 다양하나, 연 10% 미만의 이자율은 일부 사업에서 차입 초기 단기간에만 적용됨. 예컨대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2005~2007년까지는 6%, 2008년 8%, 2009년부터 16%, 2013년부터 20%로 약정되어 있음.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11(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5), p. 73에서 인용)

-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당좌 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판단한 주장을 배척하고 재조사 결정을 하여 위험과 만기를 고려한 이자율로 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함<sup>74)</sup>
- 법원에서는 현재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기 감정결과,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위험부담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승소하여 상고심 등이 진행중임

〈표 II-8〉 후순위차입금 관련 진행현황

원고	하급심 판결	현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심에서 원고청구 인용	2심 계류중
천안논산고속도로	2심에서 원고청구 기각	대법원 계류중
신공항하이웨이	2심에서 원고청구 인용	대법원 계류중
우면산인프라웨이	2심에서 원고청구 인용	대법원 계류중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및 법원사건검색 조회를 통해 구성.

- 법인세법상 BTL에서 취득자산을 금융리스채권과 사용수익기부자산 중 어떤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질의회신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고 있으나<sup>75)</sup>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러한 분류는 전체 사업기간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금융리스채권의 유효이자율상각과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정액법 상각으로 인해 기간별 과세소득의 차이를 가져오게 됨
  - 질의회신은 BTL 취득자산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금융리스채권 상각액과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하나<sup>76)</sup>, 실무상으로는 기업회계에서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이를 세무상으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74) 조세심판원 2015.8.18. 2014광2802 결정, 2014.6.9. 2014중0741 결정 등.

75) 법인세과-2178, 2008. 08. 27.

76) 법인세과-798, 2012. 12. 24., 법인세과-687, 2010. 7. 19.

##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과세체계

- SIB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별도로 SIB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없으며, 실무상으로도 아직 자금 조달 및 집행된 선례가 없어 실제 과세제도가 적용된 적이 없음
  - 따라서 사업구조, 법인형태, 거래방법 등에 따라 향후 세제의 적용은 달라질 수 있음

### 1) 운영기관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과세

- 기본적으로 운영기관 등은 일반적인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서울시 SIB 운영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sup>77)</sup>이므로 주식회사와 동일한 과세가 적용됨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유한책임회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인세법상 다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정부로부터 수취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제공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는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SIB나 경기도 SIB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여 면세될 것으로 판단됨
    - 유사한 용역의 공급사례인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등의 면세 회신도 이를 뒷받침함<sup>78)</sup>
-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과세는 사업수행기관의 성격, 운영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추정됨
  - 사업수행기관의 법인격 및 영리법인인지 여부, 약정상 용역의 공급주체 및 사업비의 지출방법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음

77) 팬임팩트코리아(<http://panimpact.kr/mission/>, 검색일자: 2016. 3. 4.).

78)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513, 2012. 10. 12. 및 부가가치세과-990, 2013. 10. 24. 다만, 희망리본사업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 만약, 운영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게 되면 많은 조세혜택이 부여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되며<sup>79)</sup>(지방소득세도 동일<sup>80)</sup>),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가 감면됨<sup>81)</sup>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용역<sup>82)</sup>, 교

79)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 제1호 또는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차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81)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8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 육용역<sup>83)</sup>에 대해 면세 적용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인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SIB 구조에서는 운영기관이 인증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의 고용, 의사결정구조,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은 부합할 수 있음
    - 다만, 민간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의 이익추구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제한하는 효과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유인을 낮출 수 있음
  -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의 수입 요건은 부합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사회적 목적 중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일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sup>84)</sup> 사회성과보상이 낮은 가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sup>85)</sup>, 지역사회공헌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기 때문임
    - 직전 6개월 영업활동의 수입에 대해 총 노무비의 50% 이상 요건이 존재하는데, 성과보상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운영기관의 수입은 없어 이의 충족이 불가능하며, 그 외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지표도 충족이 불가능함

##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운영기관과 투자자 간의 약정 즉, SIB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이자소득, 공동사업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sup>86)</sup> 및 파생결합증권 또는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에 따른 수익<sup>87)</sup>은 배당소득

8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84)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업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 2015. 3. 19, p. 52.

85) 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에서 사례로 희망리본사업 위탁수행자에 대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미충족으로 인증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고 성과보상에 대해 언급이 없어(고용노동부(2015), p. 54), 성과보상이 제외될 수 있는 여지도 보인다.

86)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

87)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으로 분류함

- 그러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투자매매업자가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 가능하므로<sup>88)</sup>, 해당 증권회사가 운영기관이 되는 경우는 희박할 것으로 보아 검토에서 제외함
  
-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 증감에 따라 과세되는 법인세법하에서 실제 발생 수익과세소득 및 손실의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어떠한 형태의 투자약정이더라도 법인인 투자자가 이익을 수취하는 경우 수취한 소득에 대해 과세됨
    - 다만, 소득이 이자인지 배당인지에 따라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가 달라짐
  - 투자약정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인 경우 투자에 따른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sup>89)</sup> 및 심판례, 판례에서는 일반적인 채권포기는 성격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SIB는 채권의 성격이 아닐 뿐더러 채권으로 보더라도 사전약정에 따라 대손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만약, 사회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고 이의 과실만을 변동하는 SIB가 존재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아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상환이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손금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
    - 만약, 채권포기로 보게 된다면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채권면제를 받은 운영기관이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지정기부금이 됨
  
- 투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금손실이 가능한 SIB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분배 또는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에 따른 수익이므로 배당소득으로 과

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89)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 ... 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세됨

- 기초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준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것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경제통계수치 등도 가능하게 함<sup>90)</sup>

○ 원금보장 SIB는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이므로 관련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됨<sup>91)</sup>

○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공제가 되지 않음

- 현행 개인의 이자·배당소득세제에서는 원금손실에 대해서 비용으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으며, 최초 투자시 기부가 아니었을 뿐더러 법인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기관은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지 않아 기부금공제도 불가능함

9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15, p. 25.

91) 유사한 질의회신(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2005. 7. 15.)도 같은 취지로 기술하고 있다.

### Ⅲ. 국외의 민관협력사업 사례 및 과세체계

#### 1. 국제기구의 관점

##### 가. 세계은행(World Bank)<sup>92)</sup>

- 세계은행에서는 과세체계가 PPP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PP의 실행 가능성을 과세체계와 연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함
- 세계은행에서는 PPP 관점에서 고려할 과세체계와 이에 대해 적용 가능하거나 실행되고 있는 세제혜택을 기술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음
- PPP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과세체계는 체계의 안정성부터 이의 변동에 따른 PPP사업에의 영향까지 다양함
  - 과세체계가 안정적인가?
  - 사업시행자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세목의 종류는(용역세, 소득세, 배당세 등)?
  - 외국투자자가 부담하는 특별세가 존재하는가?
  - 환경세/배출세와 관련된 세제가 존재하는가? 배출저감과 같은 환경증진행위(clean solution)에 대한 세액공제가 존재하는가?
  -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면제가 존재하는가?
  -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은 자산의 상각 또는 손상에 대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92) World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Resource Center  
(<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legislation-regulation/framework-assessment/leg-environment/taxes-and-taxation-issues>, 검색일자: 2015. 12. 31.).

- 특정 사업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과세체계와는 별도의 특정 면제 또는 예외가 존재하는가?
  - 과세체계의 변동에 따라 협약하에서 보상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가?
- 각 국가에서는 특정 사업 또는 지역에 대한 PPP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혜택을 사용할 수 있음
- 가장 일반적인 세제혜택은 과세면제기간(tax holiday)을 부여하는 것임
    - 이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 또는 투자자에게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의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자본투자자, 대출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배당·이자·재산세·기타 준조세 등을 면제하는 방식임
  - 과세면제기간의 변형된 형태로 조세한도(tax stabilization)가 다수 발견됨
    -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협약기간 동안 특정 유효세율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임
  - 세제 변경은 PPP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이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건이 사업협약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나. 국제연합(United Nation)

- UN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담당하는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도 PPP에 대한 세제혜택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음<sup>93)</sup>
- BOT사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 면제
  - BTO 및 BOT사업에서 정부 등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제한세율 적용 또는 면제
  - 여러 가지의 준조세 감면 또는 면제
  - 법인소득세 산정 시 투자의 특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공제
  -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한 이자에 대해 제한세율 적용

93) UNESCAP

([http://www.unescap.org/ttdw/ppp/ppp\\_primer/351\\_types\\_of\\_government\\_support\\_and\\_incentives.html](http://www.unescap.org/ttdw/ppp/ppp_primer/351_types_of_government_support_and_incentives.html), 검색일자: 201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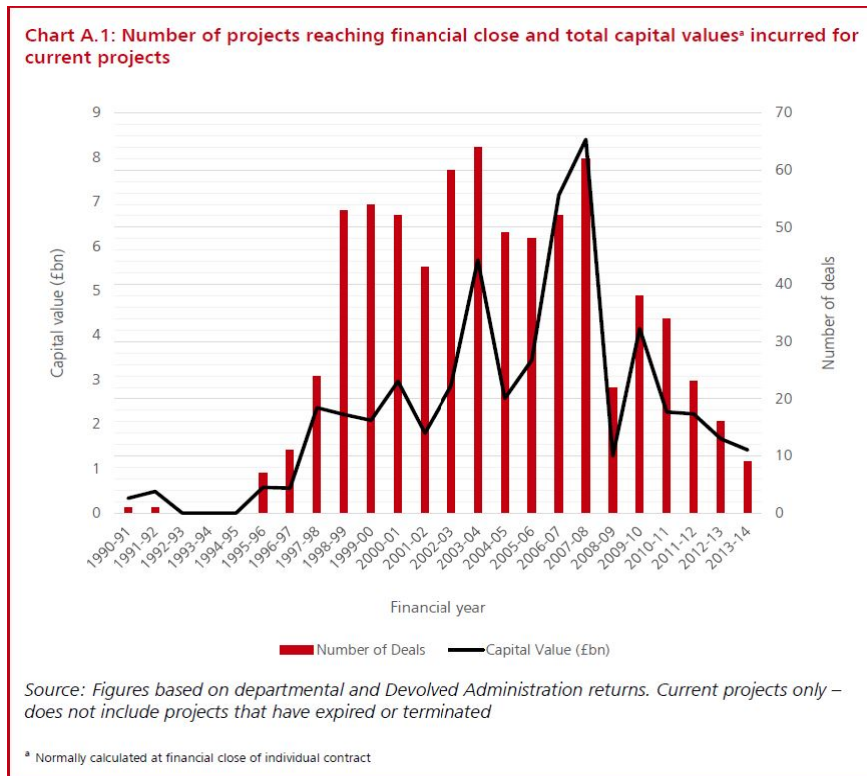
## 2. 영국

### 가. 민간투자사업

#### 1) 제도

- 영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PPP를 시작하였으며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알려져 있음
  - 1990년 최초로 PPP를 시작한 이래 2014년 3월 기준으로 총 728건의 프로젝트(이 중 671건이 운영중), 566억파운드의 자본조달이 이루어져 왔음
  - 2000년을 기점으로 프로젝트 건수나 조달금액은 하향추세에 있음

[그림 Ⅲ-1] 연도별 금융약정이 체결된 프로젝트 건수 및 자본조달액



자료: HM Treasury,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2014 summary date, December 2014, p. 8.

- 주무관청별로 보면 교육부가 16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보건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뒤를 잇고 있음

〈표 Ⅲ-1〉 영국의 PFI 현황

(단위: 건, 백만파운드)

부처	프로젝트 건수	자본조달액
Cabinet Office	1	6.7
Crown Prosecution Service	1	18.2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1	21.8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74	2,728.9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17	348.9
Department for Education	168	7,799.5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	1	5.5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30	4,073.2
Department for Transport	62	7,878.8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3	1,102.7
Department of Health	123	12,082.9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	17.1
GCHQ	1	331.0
HM Revenue and Customs	8	862.1
HM Treasury	1	141.0
Home Office	28	1,047.9
Ministry of Defence	41	9,042.8
Ministry of Justice	23	798.6
Northern Ireland Executive	38	1,985.1
Scottish Government	83	5,690.0
Welsh Government	23	566.7
Total	728	56,549.5

자료: HM Treasury,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2014 summary date, December 2014, p. 9.

- 영국 정부는 PPP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00년 Partnership UK를 창설하여 2011년 Infrastructure UK가 이의 기능을 이어 받았으며, 2016년 1월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sup>94)</sup>

- 영국의 PPP는 1992년부터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의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2012년 이후 Private Finance 2(PF2)로 변경됨
  
- PFI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형태임
  - 민간부문이 특수목적기업(Special Purpose Vehicle: SPV)을 설립하여 설계, 건설, 금융, 운영을 수행하고 이의 이용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unitary charge)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짐<sup>95)</sup>
    - 사용료는 건설의 지연, 운영의 미비, 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액되도록 하여, 일부 사업위험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 2012년 영국 정부는 기존의 PFI를 대체하는 PF2를 도입함<sup>96)</sup>
  - 정부의 PFI의 비효율성,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경직성, 투명성 저하, 부적절한 위험 배분, 적격성(value for money: VFM)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임
  - 이를 위해 PF2에서는 기존의 PFI 구조에 정부의 지분투자, 민간지분투자 경쟁입찰, 정부 역할의 중앙 집중화 등을 도입함
    - 협력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SPV의 소수주주로 참여하고, 민간의 지분 투자에 경쟁을 도입함
    - 정부의 조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역할을 중앙 집중화함
    -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없는 서비스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에 사업의 주목적 이외의 관련 소규모 서비스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
    - 정부의 부외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약정을 함께 관리하고, 정부가 지분을 취득한 사업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발행
  
- 기본적으로 영국의 PFI나 PF2는 우리나라의 BTL사업과 유사하게 수요위험을 부담하

94) Infrastructure UK(<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frastructure-uk>, 검색일자: 2015. 12. 31.).

95)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Private Finance Initiative, Seventeenth Report of Session 2010, 12, August 2011, p.4.

96)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 December 2012. pp. 4-12.

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일부 그림자가격(shadow toll) 등을 이용해 민간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정부가 사용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수요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그림자가격은 이용자의 사용에 따라 사용료지급액이 결정되지만 이를 사용자가 아닌 정부로부터 수취하는 형태임

## 2) 과세체계

### 가) 법인소득세

- 영국 과세관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영국의 PPP인 PFI에 대한 소득세 매뉴얼을 공지하고 있음<sup>97)</sup>
  - 다만, PFI 매뉴얼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IFRIC 12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sup>98)</sup>과 IFRS에 기반한 기준인 FRS(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01, 102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침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기본적으로 재무보고가 세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국 PFI에서 과세소득 산정이 GAAP을 근거하는 규정이 일부 존재하여 기존 GAAP에서 IFRIC 12로 전환될 경우 수익인식시기, 인식금액의 측정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PFI에서 소득이 사업소득(trading income), 부동산소득(property income) 또는 두 가지 소득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지분 또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재리스하

97) HM Revenue & Customs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business-income-manual/bim64000>, 검색일자: 2015. 12. 31.).

98) IFRIC 12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민간투자사업'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나, 이의 번역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2112호의 제목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번역하여 이를 준용한다.

는 등의 경우 연간사용료지급금(annual service payment or unitary charge)이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이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배분됨

○ 사업소득으로 분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PFI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업소득으로 구분에 있어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음

- 회계상의 고정자산(경제적으로 부동산을 통제) 또는 금융자산으로의 인식 여부는 이러한 소득구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표 Ⅲ-2〉 소득(자산)의 분류 예시

	사실관계	구분
1	민간사업자가 자산이 취득한 토지에 교정시설을 건설하여 25년간 운영하고 매년 사용료지급금을 수취함	교정시설은 고정 자본자산으로 자본공제로만 공제 가능
2	민간사업자가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여 병원을 건설하고 이를 25년간 임대하면서 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사용료지급금을 수취함	병원은 부동산영업의 고정 자본자산으로 자본공제로만 공제 가능
3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건설하고 이를 계약기간 동안 국가(신탁)에 귀속시키면서 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사용료지급금을 수취함 정부는 토지에 대해 건설용역과 부대되는 서비스 이외의 접근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하지 않음	병원은 사업용 수익적 지출로 사업비용으로 공제 가능
4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25년간 유지하면서 매년 사용료지급금을 수취함 토지 및 도로는 계약기간 동안 정부에 귀속되며, 정부는 건설 및 지원서비스 이외의 접근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허용하지 않음	도로건설비용은 사업용 수익적지출로 사업비용으로 공제 가능
5	4번과 상황은 동일하나 정부로부터 사용료지급금을 수취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통행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여 회수함	건설비용은 자본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임

자료: HMRC Business Income Manual 64040~64060.

□ 세무상 PFI 자산 완공 시 수익인식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함

○ PFI 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회계(SSAP 9)가 적용되면 PFI 자산이 완공될 때 관련 수익 및 비용, 금융자산을 인식하는데 세무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함

- (FRS5에 따라)PFI 자산을 고정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성격에 따라 상 각금액의 공제 여부가 달라짐
  - 고정자산이 자본자산(fixed capital asset)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해 세 무상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본화된 수익적 지출(capitalised revenue ex- penditure)이라면 회계상 상각과 동일한 시기에 세무상 공제가 이루어짐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자본자산이라도 사업시행자의 배타적인 접근권한이 종료 되는 이전 시기에 자본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결과는 유사함
  
- 세무상 사용료지급금의 수익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며 경우마다 과세소득산정 이 달라짐
  - 회계상(FRS 5) PFI 자산이 고정자산으로 인식되면 사용료지급금을 계약기간 또는 상각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함
  - 회계상 PFI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 금융자산상각액과 사용료지급금 중 운 영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인식됨
    - 다만, 금융자산 회수금액이 세무상 총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즉, 세무 상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면서 회계상 금융자산이 인식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회수금액을 수익/비용으로 인식함
  
- 부대사업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인식되는데, 부대임대수익은 부동산소득으로 분류됨

#### 나) 부가가치세

- 원칙적으로 PFI의 건설공급은 VAT가 면세되는 공급으로 간주함<sup>99)</sup>
  - 이는 영국 부가가치세법 면세규정 중 토지 및 토지사용권의 부여<sup>100)</sup> 등으로 보기

99) HMRC(<http://www.hmrc.gov.uk/manuals/vatlpmanual/vatlp02540.htm>, 검색일자: 2015. 12. 31.).

100) VAT Act 1994, Schedule 9, Group 1, Land: The grant of any interest in or right over land or of any licence to occupy land, or, in relation to land in Scotland, any personal right to call for or be granted any such interest or right.

때문임

- 그러나 영국은 면세에 대한 과세선택권(option to tax: O2T)이 존재하여 PFI는 표준세율의 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는 매입세액 환급을 위한 것임
- 다만, 공공부문과 약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O2T 선택에 대해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일부 주거 등과 관련된 경우<sup>101)</sup>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서비스와 건설이 구분되거나 서비스가 대부분인 사업의 경우에는 이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도 가능함
  - PFI에서 서비스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서비스가 대부분인 사업으로 인정한 사례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일부 사업뿐임
-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경우는 서비스 공급이므로 표준세율로 과세됨

##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 1) 제도

- 영국은 SIB를 최초로 개발한 국가로 가장 많은 SIB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 및 조직을 구비하고 있음<sup>102)</sup>
  - 2007년 고든 브라운 총리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 아소카(Ashoka)의 아서 우드가 담당하는 개발도상국 투자 후 사회적 성과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우발적수익채권’을 차용한 것이 시발점이 됨
    - 이후 사회적행동위원회(Council on Social Action)를 통해 제반여건이 조성되고 이후 현재의 SIB가 됨

101) VAT Act 1994, Schedule 9, Group 5. Construction of buildings, etc.

102) Centre for Social Impact Bonds([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 검색일자: 2015. 12. 31.).

- 2010년 세계 최초의 SIB사업인 피터버러 수감시설의 재범방지 SIB가 실행됨
- 영국 정부는 SIB 및 사업결과에 따른 지급액을 위해 2012년 2천만파운드 규모의 Social Outcomes Fund 및 2013년 4천만파운드 규모의 Commissioning Better Outcomes을 조성함
- 2012년 내각사무처에 SIB센터를 두어 SIB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영국 SIB제도는 우리나라의 SIB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주무관청은 SIB 실행 전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sup>103)</sup>
  - 타당성조사는 SIB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SIB 제안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요소, 필요한 자원을 검토함
  - 타당성조사는 주무관청이 내부적으로 수행하거나 외부자문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 2) 과세체계(조세혜택)

- SIB를 발행하는 기업이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인증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투자세액공제(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sup>104)</sup>
- SITR은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이연 및 면세의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짐
  - 개인이 투자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세액에서 투자원금의 30%를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 수탁자, 임원 또는 종업원이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혜택을 배제함
  - 자본이득을 적격사회투자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소득세를 사회적투자가 회수되는

103) Cabinet Office(<https://www.gov.uk/guidance/social-impact-bonds>, 검색일자: 2015. 12. 31.).

104) HM Revenue & Customs, Guidance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ocial-investment-tax-relief-factsheet/social-investment-tax-relief>, 검색일자: 2015. 12. 31.).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사회적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 자체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그러나 투자에 대한 배당과 이자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됨

○ 이러한 세제혜택은 2015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이루어진 투자 또는 자본이득에 적용됨

□ SITR에 대한 투자는 주식과 채권 모두 가능하나 금액의 한도가 있으며, 이의 회수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는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주식은 고정된 배당 또는 비율, 채권은 무담보부 및 일반 채무(무담보채권은 제외)에 비해 후순위 등의 요건을 두어 실질적으로 투자회수에 대한 확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sup>105)</sup>

○ 하나 이상의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나 총한도는 1백만유로로 제한됨

□ 내각사무처는 국가 등과 체결된 SIB계약을 보유하는 특수목적기업(SPV: special purpose vehicles)이 사회성과계약자(SIB contractor)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함<sup>106)</sup>

○ SPV는 설립 시부터 사회성과계약만을 위해 설립되며 소득세법상 배제되는 활동<sup>107)</sup>에 참여하지 않음

- 배제되는 활동은 토지, 증권 또는 여타 금융상품의 매매, 은행, 보험, 대부 등의 금융활동, 부동산개발, 수산업 및 양식업 등임

○ 또한 SPV의 계약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최소한 계약당사자 중 하나 이상이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당

105) HM Revenue & Customs, Social Investment Tax Relief(SITR)-investor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9925/investors-guide.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89925/investors-guide.pdf), 검색일자: 2015. 12. 31.).

106) Cabinet Office,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Guidance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Social Impact Contractors, January 2016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2974/SITR\\_AccreditationGuidanceVersion2forpublicationJan16V2.pdf](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2974/SITR_AccreditationGuidanceVersion2forpublicationJan16V2.pdf), 검색일자: 2015. 12. 31.).

107) 257MQ of Income Tax Act 2007.

국(contracting authorities)<sup>108)</sup>이어야 함

- 계약은 달성하고자 하는 '정의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목적<sup>109)</sup>을 가지고 있음
- 정의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측정방법이 계약에 정해져 있어야 함
- 정의된 결과를 산출하는 진행과정이 내각사무처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기간마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계약당국이 결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최소한 60% 이상이 정의된 결과에 따른 조건부이어야 함

○ 여러 계약당국과 다수의 SIB계약을 체결하는 현물구매 SIB(spot purchase SIB)에 대해서는 인증기간을 부여함

### 3. 미국

#### 가. 민간투자사업

##### 1) 민간투자사업 제도

###### 가) 정의 및 유형

□ 미국의 민간투자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s)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으로 재정 위험 및 민간 책임 정도에 따라 민관협력사업 유형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sup>110)</sup>

○ Savas(2000)는 민간투자사업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구성된 공적활동 영역을 민간

108) 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Article 2.

109) 이에 대한 예시로 청년층·노년층, 병약자, 장애인, 재무적 곤경 또는 여타 불리한 점(disadvantage)에 따라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대응, 빈곤방지대책, 고용·문화·유산 또는 운동분야의 증진, 범죄의 예방, 교육의 발전, 사회적주택 및 무주택자에 대한 대응, 사회시설의 제공 등을 나열하고 있다.

110) 류시균, 「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09, p. 14.

에 의해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Forrer et al.(2010)은 “민간단체가 공공서비스 또는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계약에 따른 활동”이라고 정의함<sup>111)</sup>

○ 또한 Peirson and Mc Bride(1996)는 다양한 형태의 PPP는 다음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고 설명함

- 민간단체는 공공시설을 건설, 확장 또는 리모델링함
- 민관협력사업 계약대상 시설은 계약기간 동안 민간단체에 의해 해당 시설 또는 서비스가 제공됨
- 민간단체는 계약 기간 종료 후 공공시설을 정부에 반환 또는 이전해야 함

□ 미국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공익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는 매우 넓은 범위의 인프라 및 서비스에 민간투자사업이 활용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학교·병원 등의 의료시설, 신재생 에너지사업, 수도 및 하수처리장, 교도소, 경찰서와 소방서, 국방 프로젝트, 고속도로·교량·철도와 같은 운송부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됨

□ 민간투자사업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는 다음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음<sup>112)</sup>

- 공공부문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민간부문은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 및 실행(운영 및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미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장기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자금 및 시설의 소유권 등에 대한 재정관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이 존재함

□ 민간투자사업 국가위원회는 정부회계부서(Government Accounting Office)가 1999

111)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 *Privatization of Infrastructure Assets: Financial Structures, Participant Motivations, and Lessee Tax Benefits*, Columbia College, 2013, p. 3.

112)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and Mark J Ried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March 2015, p. 175.

년 정의한 유형을 바탕으로 18개의 민간투자사업을 설명하고 있으며<sup>113)</sup>, 이는 인프라 자산을 새롭게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기존 시설을 유지·보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sup>114)</sup>

〈표 Ⅲ-3〉 미국 민관협력사업 유형

PPPs for new construction	PPPs for existing facilities and services
Design-build	
Design-build-maintain	
Design-build-operate	
Design-build-operate-maintain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	Operate and maintain
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transfer	Operate, maintain and manage
Build-operate-transfer	Buy-build-operate
Build-own-operate	Enhanced-use leasing
Developer finance	Lease-develop-operate
Lease/purchase	
Sale/leaseback	
Tax-exempt lease	
Turnkey	

자료: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 Mark J Ried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March 2015, p. 175.

#### 나) 민간투자사업의 장단점

- 미국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함에 따라 위험 이전, 정부부채의 감소, 예산 구제 (Budget Relief), 비용 절감, 우수한 자산 및 서비스 공급, 저가입찰 방지(Avoids Underbidding), 짧은 건설 기간, 민간의 전문적 기술 활용,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sup>115)116)</sup>
- 민간투자사업은 단 한 번의 자금 투입으로 정부의 예산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음

113) National Counci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http://www.ncppp.org/ppp-basics/types-of-partnerships/>, 검색일자: 2016. 3. 4.).

114)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and Mark J Riedy(2015), p. 175.

115) Practical Law Fina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ssues and Considerations*,” *Practical Law Finance*, 2013, pp. 2~3.

116)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2013), pp. 6~7.

(Forrer et al 2010; Moreland and Razaki, 2008)

- 또한 재정난에 처한 정부가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할 수도 있음(Orski, 2008)
  -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며, 공공자산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가격이 발생시키는 대리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이 정부보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른 방법보다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Savas, 2000)
- 민간투자사업 활용에 따른 단점으로는 높은 거래비용 또는 금융비용,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 상실 및 정부 수익 상실, 정부가 제공할 때보다 높은 사용자 비용 등을 들 수 있음<sup>117)</sup>
- 민간투자사업이 특정 프로젝트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민간은 자금 조달시 대체로 정부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많은 금융비용이 발생함
  -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정부는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없으며, 정부가 공공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높은 사용자 비용이 발생하기도 함
  - 다만, 이 같은 단점은 반대 작용(예를 들어, 높은 금융비용은 면세채권 발행 등)으로 상쇄되기도 함

#### 다) 미국의 민간투자사업 지원제도

- 미국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 부채보증, 통행료 및 수수료 징수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e and Innovation Act), WIFIA(Infrastructure Finance Innovation Act) 등의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TIFIA는 고속도로 및 교통시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는 주 또는 지방정부, 교통기관, 철도

117) Practical Law Finance(2013), p. 3.

회사 및 민간기관이 포함됨<sup>118)</sup>

-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과 같은 고정금리를 적용해 사업비용의 최대 49% 까지 담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은 프로젝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 뒤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3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 지원방식이 있음

○ WIFIA는 환경보호기관(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및 미군의 홍수 통제 프로젝트와 함께 관리되는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임<sup>119)</sup>

- WIFIA는 파이프 교체 또는 복원, 처리시설의 건설 및 복원, 담수화 사업, 지하수 보충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물 또는 폐수와 관련된 인프라 사업을 지원
- WIFIA는 최소 규모가 2,000만달러 이상인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됨(다만, 25,000명 이하의 지역민을 위한 사업의 경우 500만달러 이상도 가능함)

○ TIFIA와 WIFIA는 면세 자금 조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자금 조달원이 바로 기업활동채권(Private Activity Bonds, PABs)임<sup>120)</sup>

- PABs는 프로젝트의 개인개발자(private developers) 등을 대신하여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면세채권임
- 면세채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지원 금액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PPP를 위한 다른 자금 조달 방법에는 연방정부에 의해 이자비용이 지원되는 직접 지불채권(direct-pay bonds)도 있음<sup>121)</sup>

- 이 같은 채권은 미국의 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부문에서 인프라의 투자 유치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임

118)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 Mark J Riedy(2015), p. 184.

119)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 Mark J Riedy(2015), pp. 184~185.

120)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 Mark J Riedy(2015), p. 185.

121) Robert H Edwards Jr, Randall F Hafer & Mark J Riedy(2015), p. 186.

## 2) 민간투자사업 과세체계

### 가) 과세제도

- 미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특별한 조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감가상각 방법 등 몇몇 부분에서는 일반기업과 다른 적용을 받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sup>122)</sup>
  - 자산의 감가상각 및 기타 자산의 세법상 감가상각률 등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들 각각의 상황 및 계약 관계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함
  -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대상 시설에 대한 소유방식에 따라 세법상 상각 인정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sup>123)</sup>
    - 감가상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구매자가 최대한의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의 임대(lease)를 구매 형태로 분류하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음<sup>124)</sup>
  
- 미국은 연방조세법(federal tax law)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업투자를 다른 사업에 투자한 것과 대부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sup>125)</sup>
  - 미국에서 무역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들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교통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파트너십'과 거의 유사한 법적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교통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코네티컷(Connecticut)주는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재산세는 면제해 주

122) Gwen Chisholm Smith, Legal Research Digest 45,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July 2014, p. 19.

123) Gwen Chisholm Smith(2014), pp. 19~20.

124)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2013), p. 7.

125) Gwen Chisholm Smith(2014), p. 19.

고 있음

- 미국 민간투자사업의 과세체계를 건축개발비용, 공적자금과 사업개발자의 소득, 사업시행자의 자본화 비용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음
  - 사업개발자(Developer)의 건축개발비용<sup>126)</sup>
    - 사업개발자가 지불한 자산의 개선비는 임차료로 처리하도록 한 명시적 계약이 없는 한 임차료가 아니며, 자본화된 건설기간 이자를 포함하며, 감가상각 과세기준에 포함시킴
  - 공적자금(public funds)과 사업개발자의 소득<sup>127)</sup>
    - 공적자금이 인프라자산의 개선을 위한 건축비용에 사용되며, 이를 사업시행자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공적자금을 통한 개선이 리스계약 종료 후 주 또는 지방정부에 반환되는 등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공적자금은 주 또는 지방정부 임차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으로 봐야 하며, 이를 개발자의 소득이나 (임차시설의)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 또한 주 또는 지방정부 소유 임차지개량<sup>128)</sup>을 위해 개발자에게 지불한 공적자금을 사업시행자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았더라도 사업개발자가 법인이라면 Section 118에 따라 비주주 자본출자(non-Shareholder capital contributions)로서 개발자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사업개발자의 자본화 비용: 감가상각 등<sup>129)</sup>
    - 개발자의 시설(facility) 개량비(자본화된 건설기간이자 포함)에 따른 자본화비용은 MACRS나 대체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함

126)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2013), p. 8.

127)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2013), p. 8.

128) 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부동산의 개량에 지출된 비용은 그 고정자산에 추가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129) Khalid A. Razaki, Raymond A. Pollastrini & Robert J. Moreland(2013), p. 9.

나) 민간투자사업의 조세지원제도

- 민간투자사업 특히 교통사업 관련 사업은 ‘파트너십’과 거의 유사한 법적 형태를 지니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조세제도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sup>130)</sup>
  - 다만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정부에 의해 사용된 자산의 감가상각 및 기타 자산의 세법상 감각상각률 등의 세제상 혜택을 위해 파트너십으로 분류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교통시설을 임대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코네티컷(Connecticut)주 등 일부 지역은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함<sup>131)</sup>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1) 사회성과연계채권 제도

가) 정의 및 현황

-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기본 개념 및 배경은 정부의 비용을 줄이고 장기프로그램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선행 자본 제공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는 것으로, 성공하면 투자자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지불하고, 실패하면 투자손실을 보는 구조를 지님<sup>132)</sup>
  -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수익을 지급하고도 정부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성공채권(Success Bonds), 사회이익채권(Social Benefit Bonds)

130) Gwen Chisholm Smith(2014), p. 19.

131) Gwen Chisholm Smith(2014), p. 19.

132) Anna R. Kimbrell, *Social Impact Bond: Can Private Investors Cure Society's Ills and Make a Profit?*, *Moral Cents*, Winter/Spring 2014, p. 5.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본조달구조(financing arrangement)는 동일함<sup>133)</sup>

- 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기관이나 외부 조직 사이의 혁신적인 금융배치를 말하는 것임
  - 정부는 일정기간에 걸쳐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적 결과 또는 목적을 설정하고 외부기관(또는 조직)이 이를 달성할 시 약속된 수익금을 지불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성공 프로그램에 따른 지급요건을 갖춘 하나의 금융 옵션으로 취급됨
- 이 금융계약이 매우 혁신적인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비영리단체, 기타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민관파트너십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방식(business-like approach)을 활용하는 새로운 혁신 방안임

□ 미국은 2012년 2월 뉴욕시에서 재범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현재 3개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시행되고 있음<sup>134)</sup>

- 미국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2012년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함
- 뉴욕시는 재범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골드만삭스재단이 96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도 블룸버그 자선재단에 의해 투자금액 중 720만달러는 보장받는 계약을 체결함
  - 골드만삭스는 재범발생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투자 원금을 회수하며, 10%보다 더 줄어든 경우 계약에 따라 최대 210만달러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즉 골드만삭스는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따른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로 마이너스 240만~210만달러 사이에서 손익이 결정됨
- 뉴욕시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이 시행된 지 몇 달 뒤 메사추세츠에서도 청소년들의 재범과 만성 노숙자 수 감소를 위해 5,000만달러 규모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

133) Anna R. Kimbrell(2014), p. 5.

134) Anna R. Kimbrell(2014), p. 7.

합<sup>135)</sup>

나)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과세체계

- 현재 미국 정부의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특별한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오히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의 금융 혁신프로그램인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sup>136)</sup>
    - 사회성과연계채권에 참가한 비영리단체가 만약 사적이익을 달성할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의해 비영리 면세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
  
- 미국 내에서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미 영국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sup>137)</sup>
  - 미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sup>138)</sup>
    - 자본이득세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실적을 면제하는 것은 투자자 모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SIB는 그 가치를 사업 종료 시까지 알 수 없으므로 세금 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시 투자자는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데 이 같은 금융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일 투자자의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선세액공제(charitable tax deduction)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sup>139)</sup>

135) Anna R. Kimbrell(2014), p. 8.

136) Anna R. Kimbrell(2014), pp. 13~14.

137) Anna R. Kimbrell(2014), p. 26.

138) Benjamin R. Cox, "Financing homelessness prevention programs with social impact bonds," *Review of Banking & Financial Law*, 2011-2012, pp. 981~982.

139) Benjamin R. Cox(2011-2012), p. 982.

- 사회성과연계채권보다 더 넓은 범위인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에는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와 시장세액공제(The New Market Tax Credit)라는 세제상 혜택이 적용되기도 함
  - 저소득 주택 세액공제(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는 1986년 도입되어 저소득층에 주거자금 등을 제공하고 있음<sup>140)</sup>
  - 시장세액공제(The New Market Tax Credit)는 저소득 지역사회<sup>141)</sup>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0년 도입된 프로그램임<sup>142)</sup>
    - 프로젝트 사업을 예로 들면 소규모기업, 보육시설이나 주택소유기회를 증가시키는 사업 등이 있음

#### 4. 호주

##### 가. 민간투자사업

##### 1) 정의 및 현황

- 호주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통일된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난 2008년 민간투자사업 정책 및 가이드라인(The 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을 발표함<sup>143)</sup>
  - 2008년 11월 호주 의회는 민간투자사업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통과시켜 모든 주 및 지방정부가 이를 적용하도록 함

140) Enterprise(<http://www.enterprisecommunity.com/low-income-housing-tax-credits-policy>, 검색일자: 2016. 2. 25.).

141) 빈곤율이 20%를 넘거나 중산층 비율이 80%를 넘지 않는 사회를 저소득 지역사회(low-income communities)라고 볼 수 있다.

142) IRS, New Markets Tax Credit, 2010, p. 1.

143) Infrastructure Australia (<http://infrastructureaustralia.gov.au/policy-publications/public-private-partnerships/>, 검색일자: 2016. 3. 4.)

- 실무 가이드, 사회기반시설의 상업원리, 공공부문 가이드, 할인가격 방법론, 관할 정부의 요구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음

- 호주의 민간투자사업 유형은 DBFM이나 DBFO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은 인프라자산을 건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수하는 역할을 하며, 건설자금도 민간이 조달함<sup>144)</sup>
  - DBFM의 경우 정부는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로 병원, 학교, 교도소 등의 건설에 활용하고 있음
  - DBFO는 정부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참여하는 역할이 거의 없으며, 주로 도로 등의 기반 자산 건설에 활용되고 있음
  - 호주의 민간투자사업도 수요위험에 대해 민간이 일부 부담하고 있음

〈표 Ⅲ-4〉 호주 민간투자사업 예시

구분	DBFM	DBFO
민간 역할	인프라 건설, 서비스 제공	인프라 건설, 사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
정부 역할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운영 관련 역할 없음
재정	민간	민간
주요시설	병원, 학교, 교도소, 법원 등	도로 등

자료: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and Regional Development, 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Guidelines Overview, December 2008, p.11.

144)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Guidelines Overview, December 2008, pp. 10-11.

## 2) 과세체계

### 가) 과세제도<sup>145)</sup>

- 민간투자사업 관련 금융계약(Financial arrangements)을 통해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TOFA(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에 근거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됨<sup>146)147)</sup>
  - 인프라 자산의 설계 및 건설, 운영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자 또는 투자회사(Finance co.)는 TOFA를 적용함
  - 사업시행자(Project Trust)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대출이나 정부의 자산유동화 계약도 TOFA를 적용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및 최소보장금(Availability Payment, AP)은 과세대상이며, 라이선스비용(licence payments)과 설계 및 건설, 운영 및 보수 단계에서 이를 도와준 협력업체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함
  - TOFA는 사업시행자의 설계 및 건설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밖의 다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 사회적 민간투자사업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하며, 호주국세청(ATO)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정부가 개발자에게 토지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대권을 부여한 경우, 정부는 임대 또는 license 방식으로 개발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며, 개발자 역시 임대 또는 license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

145)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Business/Large-business/In-detail/Key-products-and-resources/Infrastructure---Australian-federal-tax-framework/>, 검색일자: 2016. 3. 7.).

146) TOFA는 ITAA(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Division 230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계약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147)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business/taxation-of-financial-arrangements-\(tofa\)/](https://www.ato.gov.au/business/taxation-of-financial-arrangements-(tofa)/), 검색일자: 2016. 3. 7.).

- 토지 개발작업이 완료되면 개발리스 약정조건에 따라 개발자는 정부에 개발된 토지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는 이를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
- 인프라사업(건설)의 완성에 따라 개발자는 운영권(operating rights)을 받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임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 입장에서 인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 일반적으로 권리 또는 임대와 관련된 비용에는 운영권이나 특정 기간 동안 임대 권을 부여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별로 부여된 권리 및 의무 사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대출 또는 외부투자자를 통한 금융시설 또는 Finance co가 사업시행자(Project trust)에게 자금을 공급한 것은 대출자와 대여자 모두 과세대상임
  - 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포함된(자산)유동화 계약의 재정적 공급은 과세대상임
  -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제공한 인프라자산의 설계 및 건설비가 포함된 비용은 과세대상임
    - 사업시행자는 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을 청구하고, 정부는 그 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음
  - 협력업체가 설계와 건설에 참여해 공급한 부분의 대가도 과세대상이며,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동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정부가 인프라자산의 운영 및 유지에 대해 지불한 비용도 과세대상임
    - 결과적으로 이 세액만큼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가 부여한 라이선스도 과세대상이며, 사업시행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 사업시행자에게 투자한 장기투자자들이 받은 이익은 사업시행자의 순이익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세법상 이익보다 회계상 이익이 큰 경우 장기투자자에게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임

○ 근거법률은 ITAA 1936 Division 6이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이연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의 비용기준(Cost base)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단기투자자들은 인프라자산의 설계 및 건설 단계에서만 투자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며, 여기서 발생한 손익은 경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보아 과세 또는 공제됨

□ 신탁자산(Hold trust)에 대한 세무처리는 투자신탁관리(Managed investment trust, MITs)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 만일 투자신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TAA 1936 Division 6와 자본이득세와 같은 세법을 적용받으며,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신탁관리자에게 세금이 부과됨  
 - 신탁관리자는 당기순이익 대비 외국인 투자자 지분에 대한 과세 의무가 있으며, ITAA 1936 section 98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30%, 개인인 경우 47.5%의 세율로 과세됨

○ 투자신탁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신탁관리자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음  
 - 조세정보교환국에 거주하는 수익자에게는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 다만 투자신탁관리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통제 및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나) 조세지원제도

□ 주요 조세 혜택으로는 투자신탁관리(Managed Investment Trusts)와 Tax loss incentive 제도 등이 있음

○ 투자신탁관리(Managed Investment Trusts)는 종종 인프라 및 부동산 프로젝트에 사용됨

○ 호주정부는 2011년 소유권의 연속성 검사(Continuity of Ownership Test)나 사업

의 지속성 검사(Same Business Test)를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초기 발생한 손실을 이월시킬 수 있는 조세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2013년에 Tax loss incentive 제도를 도입함<sup>148)</sup>

- Tax loss incentive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통해 민간투자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임<sup>149)</sup>
  - 10년 만기 장기 국채 이자율에 따라 건설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손실(tax loss)을 이월시킴
  - 소유권의 연속성 검사 및 사업의 지속성 검사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자본 손실을 이연할 수 있으며, 부실채권(bad debts)에 대한 공제 제한도 면제됨
  
- Tax loss incentive를 적용받으려면 250억호주달러 미만의 인프라 우선순위(Infrastructure Priority List, IPL) 목록에 열거된 민간투자사업으로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함<sup>150)</sup>
  - IPL에 열거된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주로 자본지출이 1억호주달러 이상인 교통, 수자원, 에너지 통신분야 등의 사업이 해당됨<sup>151)</sup>
  - Tax loss incentive를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는 자본지출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사업 구현을 위한 명확한 실천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이에 대한 규정은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의 Division 415와 IPD Rules (Income Tax Assessment(Infrastructure Project Designation) Rules)에 규정되어 있음

---

148)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http://ministers.treasury.gov.au/DisplayDocs.aspx?doc=pressreleases/2011/054.htm&pageID=003&min=wms&Year=2011&DocType=0>, 검색일자: 2016. 3. 7.).

149) Infrastructure Australia(<http://infrastructureaustralia.gov.au/projects/tax-loss-incentive.aspx>, 검색일자: 2016. 3. 4.).

150) Infrastructure Australia, Designated Infrastructure Project Guidelines, October 2014, pp. 1~2.

151) Infrastructure Australia, Infrastructure Tax Loss Incentive, February 2014.

##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 1) 제도

-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sup>152)</sup> 실시했으며, 사업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호주 내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호주에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이하 NSW)에서 Newpin SIB가 처음으로 시행됨
  - 현재 법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로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음<sup>153)</sup>
  
- 호주의 대표적 사회성과연계채권 사례로는 NSW주의 Newpin과 Benovolent Society 프로그램이 있음
  - NSW주는 700만호주달러 규모의 Newpin program 서비스 제공자로 UnitingCare Burnside와 계약했으며, Social Ventures Australia에서 투자자를 모집함<sup>154)</sup>
    - 최소가입금액(Minimum Subscription Amount)은 5만호주달러임
  - Benovolent Society는 1,000만호주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NSW주에서 사업을 주관 및 보증함<sup>155)</sup>
  
- 호주의 사회성과연계채권 수익구조는 성과율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금에 대한 손실분도 있음

152) 호주에서는 사회성과연계채권을 Social Benefit Bond로 표현하기도 한다.

153) Social Venture Australia  
(<http://www.socialventures.com.au/work/social-impact-bond-case-studies/>, 검색일자: 2016. 3. 7.).

154) Social Ventures Australia, *Information Memorandum Newpin Social Benefit Bond*, April 2013, pp. 3~5.

155) Benevolent Society, *The Benevolent Society Social Benefit Trust No 1*, August, 2013, pp. 9~11.

- Newpin program의 경우 회복률(Restoration rate)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며, 최대 15%의 투자수익(회복률 70% 이상일 경우)을 얻을 수 있음<sup>156)</sup>
- Benovolent Society는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 P(위험 보통)와 Class E(위험 높음)로 구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함<sup>157)</sup>
  - Class P는 원본보장 채권으로 사업 성과가 40% 이상 개선되면 최대 10%의 수익을 지급받음
  - Class E는 원본비보장 채권으로 사업성과를 40% 이상 달성하면 30%의 수익을 지급받음

## 2) 과세체계

- 현재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조세혜택에 대해 규정된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과세체계는 개인 및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음
  - 호주도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되어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된 과세체계나 쟁점사항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Newpin 사업의 경우 투자자의 이자소득(SIB Coupon Payment)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며, 납세자번호(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을 시 최고 한계세율(46.5%)이 부과되고,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GST)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sup>158)</sup>

---

156) Social Ventures Australia(2013), pp. 25~26.

157) Benevolent Society(2013), pp. 9~11.

158) Social Ventures Australia(2013), pp. 36-37.

## 5. 일본

### 가. 민간투자사업

#### 1) 제도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민간투자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을 다루는 법률을 별도로 두고 내각부에 PFI추진실을 두고 있음
  - 1999년 7월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PFI법)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지 제5차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른 기본방침(基本方針)이 2000년 3월에 제정됨
  - 내각부 내에 민간자금등활용사업추진실(PFI추진실)에서 PFI와 관련된 정부행정을 담당하고 있음
  - 최근에는 관계부처 합동위원회인 PPP/PFI 추진위원회(タスクフォース, task force)를 조직하여 PFI/PPP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있음<sup>159)</sup>
    - 이는 아베노믹스 '세가지 화살(新三本の矢)'에 따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임
- 일본의 PFI는 1999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음
  - 1999년 3건으로 시작된 PFI사업은 2015년 9월 30일 현재 누적건수로 511건, 누적사업비 45,833억엔에 이르고 있음

159) 内閣官房長官, 「PPP/PFI 推進タスクフォースの開催について」, 平成 28年 1月 19日 (<http://www8.cao.go.jp/pfi/taskforce/index.html>, 검색일자: 2016. 3. 6.).

[그림 Ⅲ-2] 일본의 PFI 현황(2015년 9월 30일 현재)



주: 사업수는 내각부 조사기준이며 협약해지, 사업중단 등은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업비는 최초 협약시 금액임.  
 자료: 内閣府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PFIの現状について」, 平成28年1月, p. 4.

- 2013년 6월 6일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회의에서는 2022년까지 PPP/PFI사업에 대해 12조엔 규모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sup>160)</sup>
  - 공항·상하수도 등에 운영권제도를 활용하는 PFI에 2~3조엔, 고속도로 등의 수익시설에 3~4조엔, 공공부동산에 민간자금유입 2조엔, 기타 유지관리 등에 3조엔 등임
- PFI 사업방식은 BTO, BOT, BOO, RO(Rehabilitate-Operate) 등이 있으며, 사업유형은 서비스구입형(サービス購入型), 독립채산형(独立採算型), 혼합형(混合型)으로 구분됨<sup>161)</sup>
  - 사업방식은 대상 시설의 건설, 소유권, 운영에 대한 것으로, 사업의 사업비 회수방법을 뜻하는 것이 아님
  - 사업의 수익 회수방법은 주무관청이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서비스구입형과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독립채산형, 이의 복합적인 형태인 혼합형으로 구분됨<sup>162)</sup>

160) 内閣府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PFIの現状について」, 平成28年1月, p. 6.

161)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motion Corporation of Japan(<http://www.pfipcj.co.jp>, 검색일자: 2016. 3. 4.).

- 그러나 실제로는 서비스구입형이 약 70%를 차지하고<sup>163)</sup> 독립채산형은 4%에 불과함(혼합형 24%)<sup>164)</sup>
- 일본 PFI·PPP협회의 데이터에서는 총 605건 중 순수 독립채산형 사업은 33건이며 사업내용은 주차장, 하수처리시설 및 일부 항만 등이 대부분임<sup>165)</sup>
- 2011년 기존의 사업유형에 대한 보완을 위해 요금을 이용자에게 징수하면서 시설 운영권을 민간이 소유하여 프로젝트 위험을 부담하는 컨세션방식(コンセッション)의 추진을 도모함<sup>166)</sup>
- 현재까지 센다이공항(仙台空港), 간사이국제공항(関西国際空港), 오사카국제공항(大阪国際空港)의 특정 운영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2) 과세체계

- 일본의 PFI법에서는 정부 및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이 기본방침 및 실시방침을 통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세제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음
  - 정부는 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항목 중 세제상의 조치를 포함함<sup>167)</sup>
  -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은 기본방침에 따라 사업 실시에 따른 방침(실시방침)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세제상의 조치를 포함함<sup>168)</sup>
- 그러나 기본방침 등에서는 원칙적인 고려에 대한 선언과 정보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정부는 현행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PFI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함<sup>169)</sup>

162)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BTL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BTO 등의 서비스구입형이 우리나라의 BTL에 해당함. 즉, 운영의 정의가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3) 内閣府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http://www8.cao.go.jp/pfi/>, 검색일자: 2016. 3. 4.).

164)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 개정사항 검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년, p. 64.

165) 日本 PFI・PPP協會(<http://www.pfikyokai.or.jp/>, 검색일자: 2016. 3. 4.).

166) 박종철(2013), p. 66.

167)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第四条 五.

168)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第五条 七.

- 또한 실시방침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내용으로 적용가능한 세제상 우대조치가 포함됨<sup>170)</sup>
-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위원회는 PFI사업 관련 세제 등의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sup>171)</sup>
  
- 실제 세제지원은 토지보유세, 토지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관련 부분만 존재하며 국세에서의 조세지원은 확인되지 않음
  - 지방세법상 세제지원은 PFI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등(정비 목적의 국립대학 교육건물 포함)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50%감면 등임<sup>172)</sup>
  
- 이외에 별도의 PFI 관련 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PFI 관련 질의응답 등에서 일부 과세방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PFI 독립채산형에서 공공시설의 운영권은 세무상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운영권의 존속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함<sup>173)</sup>
  - 우리나라 BTL과 같은 임대차거래(다만, 시설의 소유권은 민간에 있음)에서 판매리스에 해당하더라도 장기할부판매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상 연불매매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 및 비용을 임대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음<sup>174)</sup>
    - 소비세의 경우도 법인세와 관계없이 자산의 인도일(판매리스약정일 등)과 이연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이연하는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인도받는 주무관청은 공급하는 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169)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に関する事業の実施に関する基本方針 六 法制上及び税制上の措置並びに財政上及び金融上の支援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1(2), 平成27年12月18日.

170)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に関する事業の実施に関する基本方針 六 法制上及び税制上の措置並びに財政上及び金融上の支援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2(3), 平成27年12月18日.

171)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に関する事業の実施に関する基本方針 九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委員会に関する基本的な事項 2, 平成27年12月18日.

172) 内閣府, 平成22年度 P F I 関連支援措置等, 平成22年3月31日, p. 18.

173) 国税庁, 質疑応答事例, PFI事業(独立採算型)を行うに当たり有することとなる公共施設等運営権の取扱い(平成27年7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に基づいて作成しています).

174) 国税庁, 売買とされるPFI事業について(法人税の取扱い)(平成27年7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に基づいて作成しています.)

자산의 인도일에 구매하는 것으로 간주함<sup>175)</sup>

## 나. 사회성과연계채권

### 1) 제도

- 일본의 SIB는 초기 단계로 현재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중임
  - 일본은 G8의 임팩트 투자TFT에 다른 GSG(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의 참여 주체 중의 하나인 일본재단(日本財団)을 통해 SIB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일본재단은 국토교통장관의 지정에 따른 선박 등의 지정기관으로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보트경주 수익금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수취하여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재단임
- 일본은 SIB와 관련된 별도의 법제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음
  - 아직은 파일럿 테스트 형식이 진행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2014년 일본 국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 중인 것으로 추정됨
    - 예를 들어 오사카부의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大阪独自の生活困窮者自立支援) SIB 연구회자료를 보면 투자자 모집 방법이 계약 또는 특정 목적회사인지, 모집 방법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해외사례 검토 등이 요구됨을 언급하고 있음<sup>176)</sup>
- 현재 일본의 진행중인 SIB사업은 3건으로 모두 일본재단이 사업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sup>177)</sup>

175) 国税庁, 売買とされるPFI事業について(消費税の取扱い)(平成27年7月1日現在の法令・通達等に基づいて作成しています。).

176) 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SIB)を活用した大阪独自の生活困窮者自立支援のための新たな仕組みづくり研究会, 資料2 “大阪しあわせネットワーク” について~オール大阪の社会福祉法人による社会貢献事業, 平成27年12月25日, p. 9.

- 2015년 4월 15일 협정서가 조인된 일본재단·요코스카시 아동입양추진사업(特別養子縁組推進に取り組む)을 시작으로 이후 2건이 더 진행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적격성 검증 단계이거나 순수한 파일럿 테스트여서 일본재단이 사업비를 제공하며 성과에 따른 수익 등이 없거나 아직까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표 Ⅲ-5〉 일본의 SIB사업

발표일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제공자	기타
2015.4.14.	요코스카시 특별입양추진 SIB파일럿사업(横須賀市特別養子縁組推進SIBパイロット事業)	고아 아동의 가정으로 입양	일본재단	성과에 따른 수익제공 없음
2015.7.1.	학습요법을 도입한 치매예방 SIB(認知症予防領域における)	학습 요법을 도입한 치매 예방 사업	-	효과 측정 후 2016년도 본격적 도입
2015.7.16.	청소년 취업사업(若者就労支援事業)	청소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을 추진	일본재단	검증 후 2016년도 본격적 도입

자료: 日本財団(<http://www.nippon-foundation.or.jp>) 자료 재구성.

## 2) 과세체계

- 현재 일본의 SIB에 대한 별도의 과세체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아직까지 세제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는 것은 현재 일본의 SIB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77) 日本財団(<http://www.nippon-foundation.or.jp>, 검색일자: 2016. 3. 4.).

## IV. 국제비교

- 각 국가별로 민간투자사업과 SIB의 제도 및 법적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른 세제가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비교함
  - 또한 일부 유의적이지 않아 제도 전반을 검토하지 않은 국가는 해당되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함

### 1. 민간투자사업 과세체계 비교

- 각국은 다양한 법적·경제적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유형으로는 BTO, BTL, BOO 및 이의 변형형태가 적용되며 수요위험은 BTL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일부분 부담하고 있음
  - 영국은 별도의 근거법률 없이 지침 등을 통해 PFI/PF2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PFI/PF2는 우리나라의 BTL과 유사하게 정부지급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일부 사업에서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그림자가격(shadow toll)을 이용한 사업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임
  - 미국은 통합된 법률이 없으나 각 주별로 정해진 법률 및 관행 등에 따라 PPP사업이 수행되며, 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인프라 자산을 조세목적상 매입으로 보아 운영하는 구조가 많았으며, 수요위험 부담도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임
  - 호주는 통합 법률은 없으나 지난 2008년 호주 국가위원회에서 모든 주정부 및 납세자가 적용해야 할 PPP정책 및 가이드라인(The 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을 만들어 발표함

- 일본은 별도의 민간자금활용법을 통해 PFI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방식은 BTO, BOT 등이며 이의 유형으로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채산형, 혼합형, 컨세션방식과 수요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서비스구입형이 있음

〈표 IV-1〉 민간투자사업의 비교

	법률	명칭	구조	수요위험부담여부
한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BTO, BTL, BOO, BTO-rs · a 등	BTL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한 일부 부담
영국	- <sup>1)</sup>	PFI/PF2	우리나라의 BTL과 유사	대부분 부담하지 않음 <sup>2)</sup>
미국	통합 법률은 없음 <sup>3)</sup>	PPP	BTO, BOT, BOO, DB, DBO, BFOM 등 다양	DB나 O&M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험 부담이 대체로 높음
호주	통합 법률은 없으나 The 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이 있음 <sup>4)</sup>	PPP	DBFM, DBFO 등 수익회수 형태에 따라 Social PPP, Economic PPP.	social PPP는 부담하지 않으며, economic PPP는 부담
일본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따른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PFI	사업방식: BTO, BOT, BOO, RO 등 사업유형: 서비스구입형, 독립채산형, 혼합형 컨세션방식	독립채산형은 수요위험 부담하나 규모나 건수가 미미함 최근의 컨세션방식은 수요위험 부담

주: 1) 지칩 등은 존재하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2) 일부 Shadow toll방식의 수요위험 부담방식이 존재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형태의 위험부담은 아님.  
 3) PPP를 위한 통합 법률은 없으며, 각 주별로 사업 관련 법률이나 등에 따르는 것으로 보임. 최근 Washington, Puerto Rico 등 33개 주가 PPP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음.  
 4) 2008년 호주 국가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모든 호주인과 주정부에서 적용해야 할 PPP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국제기구에서는 구체적인 국가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는 PPP에 대한 세제혜택을 예시하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는 과세면세기간, 조세한도 등을, UN에서는 취득세, VAT 등의 감면 또는 면제, 법인 투자소득공제, 투자채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예로 들고 있음

〈표 IV-2〉 국제기구의 PPP 세제혜택 예시

	세계은행(WB)	국제연합(UN)
세제 혜택	과세면제기간(tax holiday)이 가장 일반적임 최대 유효세율을 적용하는 변형된 조세한도	- BOT의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 정부에 제공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VAT - 경감세율적용 또는 면제 - 기타 준조세 감면 또는 면제 - 법인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과세체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의한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는 없음
- 우리나라는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에 대해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단계별로 모두 과세대상 행위로 보고 있음
  - 영국은 차입금 이자율뿐만 아니라 차입비율에 이전가격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기부채납 시 대부분 면세 적용이 됨
    - 다만, 면세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 과세선택권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본은 기부채납행위 시 법인세나 소비세에서 과세행위로 보거나 이를 이연하여 인식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소득세법 등에서 별도의 유의적인 조세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호주는 부가가치세(GST)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과세체계를 갖고 있어 기부채납 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주무관청도 과세되며, 운영권 부여를 임대로 간주하고 있음
    - 조세지원으로는 2013년부터 도입한 Tax loss Incentive가 있음

〈표 IV-3〉 PPP 과세쟁점의 비교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혜택
	후순위차입에 대한 세무상 처리	BTL방식 수익인식	건설기간 매입세액 공제	기부채납시 사업시행자 과세	운영권 설정시 주무관청에 대한 VAT 과세	사업시행자의 BTL 부동산임대 간주 여부	
한국 <sup>1)</sup>	시가적용	실무상 금융리스 (but 예규는 무형자산)	운영사업이 과세면 공제, 면세면 불공제	법률에 의한 기부채납 가액으로 과세(과세 사업영위시 영세율 적용)	관리운영권 공급에 대해 과세	부동산 임대로 보아 명세서제출 의무 부여	도시철도건설, 과세사업 사업 시행자에 대해 VAT영세율, 사회기반시설 채권 분리과세
영국	부채비율과 이자율에 이전가격 적용 <sup>2)</sup>	기업회계를 인정하여 금융자산 인식	운영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라 다름	면세 또는 O2T	면세 <sup>3)</sup>	- <sup>3)</sup>	-
미국	- <sup>4)</sup>	주로 자산의 매입으로 분류 <sup>5)</sup>	-	-	-	-	일부 주 재산세 면제
호주	- <sup>6)</sup>	금융리스 (일정 조건 충족시)	공제 가능	과세	과세	라이선스 부여로 분류	Tax loss Incentive
일본	-	소유권이전 가등기일 과세 또는 장기할부 판매 <sup>7)</sup>	대상시설 공급이 과세되므로 공제로 추정	판매리스로 소비세 과세 또는 장기할부 판매 특례에 따라 이연 <sup>8)</sup>	해당사항 없음	부동산 임대로 보지 않음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에 대한 조세지원 혜택

주: 1)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무상 쟁점 및 여타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비교함.  
 2) 이전가격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적용됨.  
 3) 영국 PFI/PF2는 대부분 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부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면 완공시 면세되며, 건설 또는 금융과 관련된 인이 사용하는 경우 준공시 O2T에 대해 특별 조세회피방지조항이 적용됨. 또한, 토지에 대한 지분이 없다면 사업시행자는 설비에 대한 운영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세율이 적용됨.  
 4) 프로젝트의 특성,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며,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TIFIA를 후순위 채권으로 활용하기도 함.  
 5) 각각의 상황과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주로 인프라자산을 구매 형태로 분류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으로 보임.  
 6)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inbound투자에만 해당되며, 유동화라이선스 PPP모델의 금융특수목적 회사에는 제외되고 있음.  
 7) 장기할부판매특례에서 명시된 이자요소는 분리하여 소비세 비과세.  
 8) 계약형식이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매매되는 리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 등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인도는 과세면제기간, 필리핀은 비용의 추가공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법인세 면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IV-4〉 기타 국가의 민간투자사업 세제혜택

	세제혜택	요건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간접자본의 운영이 시작된 시점부터 대상시설에 따라 15년 또는 20년 중 납세자가 원하는 10년의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 비과세 (tax holida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시설: 도로, 교량, 항구, 수처리, 철도 등 공공설비, 고속도로, 공항 등</li> <li>• 대상시설이 인도에 등록된 회사 또는 이의 컨소시엄에 의해 소유됨</li> <li>• 정부 등과 건설, 유지, 운영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고 약정기간 종료시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의 비용 추가 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상시설을 건설 완공시 정부에 소유권 이전</li> <li>• 기업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투자위원회에 등록될 것</li> </ul>
남아프리카 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및 재무부 규정에 따른 PPP에 해당하여 성과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li> </ul>

주: 열거된 혜택은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투자에 대한 혜택이 아닌 협약체결 등의 PPP에 따른 투자에 대한 혜택임.

자료: IBFD Country Surveys(S. Shah, India-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J. Loke, Philippines-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P. J. Hattingh, South Africa-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Surveys IBFD).

## 2. 사회성과연계채권 과세체계 비교

- SIB는 영국 등 일부 선도적인 국가에서는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SIB를 도입하려는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과세체계나 세제혜택이 발견되지 않음
  - 영국은 SIB를 사회적 투자와 유사한 인증제도를 얻도록 하여 인증이 부여되는 경우 세액공제, 자본이득세 과세이연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SIB보다 넓은 개념인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

고 있으나 SIB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호주도 SIB와 관련된 조세혜택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SIB에 대한 투자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과세되고 있음

〈표 IV-5〉 SIB의 비교

	SIB 손실구조여부	운영기관 과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VAT과세	투자자 과세	투자자 손비처리	조세 혜택
한국	○	과세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과세	법인은 가능, 개인은 불가능	-
영국	○	과세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과세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이므로 손비 처리 가능	조건충족시 투자에 대해 SITR로 보아 세액공제 및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이연 또는 면세
미국	○	과세	-	과세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이므로 손비 처리 가능 <sup>1)</sup>	-
호주	○	과세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과세	-	-
일본	× <sup>2)</sup>	과세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 <sup>2)</sup>	- <sup>2)</sup>	-

주: 1. 각 주체별 과세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조세혜택 이외에는 일반적인 과세체계를 근거로 추정하여 적용함

- 1) SIB 투자 모집 등을 위해 자본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인 자선세액공제(charitable tax deduction)가 논의되기도 함.
- 2) 아직 파일럿 테스트 단계로 실제 투입되는 자금도 공공자금으로 손실부담 및 이익실현 구조로 설계되고 있지는 않음.

## V. 시사점

### 1. 세제혜택의 쟁점 및 필요성

#### 가. 민간투자사업과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에 대한 쟁점

##### 1) 민간투자사업

-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일종의 규제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건설·운영 등에서 제약을 받음
  - 대상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해 협약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음
  - 동일한 지역 내에 순수 민간의 주차장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차장을 비교하면, 후자를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사용료 인상, 금리인하에 따른 차입금 차환, 관련 사업시행자 주식의 매각 또는 사업의 양도 기회가 있더라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약이 존재함
    - 예를 들어 BTO사업의 경우 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최초 사용료에 물가상승률분 인상 이외의 제약을 받게 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변경·재무구조 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관련 이익 자금재조달 이익으로써 주무관청과 공유가 이루어짐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은 적격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어 단순한 재무적 이윤추구 행위 이외에 정부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됨
  -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만, 「민간투자법」하의 사업은 적격성조사가 이루어져 재무성 분석 이외의 정책적 측면도 반영되어 사업이 수행됨

- 사회적 비용/편익을 통한 타당성, 지역균형발전·정책적 측면·재원조달 및 환경성 등의 위험 요인 및 민간투자 적격성에 대한 고려가 적격성 조사에서 이루어져 이의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워짐
  -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 정책성 등의 측면이 부합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규제대상이며 사회적·정부정책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르게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할 수 있음
-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인도·필리핀 등도 일반적인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와는 다르게 협약체결 또는 투자위원회의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협약상 사업수익률(또는 ROE)<sup>178)</sup>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예측 등의 추정과 실제와의 차이 및 재정사업에 비해 높은 요금인데, 이는 추정 및 수익자부담 원칙의 문제이지 이 자체가 혜택의 부여는 아님
-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MRG가 지급되더라도 다른 요소(총(민간)투자비, 자금조달 등)가 적절하게 추정되었다면 적절한 사업수익률이 부여되었을 것이므로 수요예측 실패 그 자체가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러한 수요부족 사업은 적절하게 추정하였다면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이 애초에 진행되지 않았어야 하는(즉,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음) 측면은 존재함
    - 재정사업으로 진행하였다면 수요가 낮은 사업에 정부재정만을 이용한 사업비 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MRG 같은 지출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비난의 여론이 발생하지 않거나 민간투자사업보다 완화된 반응만이 존재하는 것임

178) 불변가적인 경우 총사업비기준, 경상가적인 경우 총(민간)투자비 기준이며, 이자율 요소는 순수 조달비용을 제외하면 사업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기자본수익률(ROE)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쟁점인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큰 그림에서 이러한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 마찬가지로 협약상 수익률의 산정 변수인 총(민간)투자비, 자금조달 등의 추정과 실제의 차이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사용요금이 높은 점은 (추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수익자부담원칙의 문제일 뿐임
    - 만약 재정사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용요금이 낮은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손실보전부분은 정부재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이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임
- 따라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이 건설보조금, MRG, 정부지급금(BTL의 경우)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님
- MRG의 경우 이미 2009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규모가 급감한 것을 볼 때, 현행 민간투자사업이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님<sup>179)</sup>
  - 건설보조금은 협약상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산정 시 총민간투자비(또는 총민간사업비)에서 배제되므로 이러한 건설보조금 지원이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예를 들어 총 투자비가 200원이고 수익률을 5%로 설정하는 경우 민간이 모두 투자하면 210원이 회수되지만, 건설보조금이 100원 지급되면 총민간투자비 100원 기준으로 민간의 회수금액은 105원임
    - 다만, 위험에 대한 투자인 경우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형식임
  - BTL의 정부지급금도 총민간투자비 대비 물가, 건설이자 등을 고려한 수익률로 산정되는 것이며,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는 5년마다 조정하여 반영하므로 특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 BTL 학교 건설비가 100원이고 5%의 수익률로 산정되었다면 정부지급금은 105원이 지급되는 형태임
- 다만, 추정과 실제와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혜택처럼 보이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세제혜택 부여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79) 앞의 II. 2.다 참조.

- 예를 들어, 총투자비(건설비)가 100원으로 추정되어 사업수익률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건설비가 80원인 경우 혜택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정부가 건설하는 경우보다 민간이 건설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효율성·효과성이 반영된 요소도 포함하는 것임
  
- 영국·미국·호주·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일수록 PPP에 대한 유의적인 세제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금융시장과 사회기반시설의 형성 정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먼저 선진국일수록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해 PPP사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굳이 세제혜택이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
    -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다양한 위험(예, 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수요가 존재하게 되어 위험사업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참가하고 상대적인 저위험사업은 저수익·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가 참가하게 됨
  -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더 이상 이에 대한 투자유인이 크지 않은 것일 수 있음
    - 따라서 선진국은 사회기반시설을 통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달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투자유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개발도상국은 경제환경에 대한 압력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계에서 중간단계에 위치함을 고려할 때 중간 정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되 이는 주어지는 이익(windfall gain)의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PPP사업은 주어지는 이익(windfall gain)<sup>180)</sup>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절한 사업수익률의 부여가 필요하나 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sup>181)</sup>

180) 'windfall gain'은 직역하면 '횡재'에 해당되며, PPP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적절한 투입 없이도 획득되는 결과 등을 의미한다.

181) Abby Semple & Laura Turley, *Public-Private Partnership Health Check: Managing partnerships during their lifetim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Note, February 2013, p. 6.

-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정된 수익 및 추정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주어지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MRG가 존재하는 BTO사업, 재구조화된 BTO사업, 정부지급금이 사실상 확정된 BTL사업은 어느 정도 주어지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명확한 구분은 어려움
  - 예를 들어 기존에 MRG가 부여되었더라도 협약상 MRG지급을 위한 최소수요에 미달하게 되면 재정지원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전히 보장된 수익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MRG가 없더라도 일부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수요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정된 사업 및 BTO-a, BTO-rs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판정이 어려움
  - BTL사업의 경우 정부지급금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지만, 금리변동에 따른 수익률의 재산정, 서비스 성과평가결과에 따른 차감을 고려하면 가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음

## 2) 사회성과연계채권

- 사회성과연계채권은 BTL과 유사하게 정부로부터 약정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을 얻는 사업이므로 BTL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 가능함
  -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사전에 합의된 수익률이므로 민간 투자사업보다 다른 혜택의 여지가 높지 않음
  - 다만, 사업비 산정의 부적정(사업비가 100원이면 충분하나 200원으로 추정할 경우) 과 성과측정 시 너무 달성하기 쉬운 구간에 수익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는 세제혜택 부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 민간투자사업의 세제혜택 부여의 근거 및 주어지는 이익과 이의 판단기준 등에 따른 행정적 비용의 소요를 고려할 때 민간의 위험부담 결과에 따른 사후적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위험부담 결과에 따른 사후적인 세제혜택은 손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설계되어야 현재 여론의 비판 및 주어지는 이익을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위험부담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후적으로 큰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에 세제혜택까지 부여하게 되어 수익률을 더 높이게 되면,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분위기로 비추어 볼 때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주어지는 이익이 존재하는 사업은 위험부담 결과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 적절한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민간이 이러한 사후적 혜택을 위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가 이루어지며, 세제혜택의 부여가 시설의 적절한 운영을 통한 이익보다 크지 않게 설계된다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사후적 세제혜택은 위험부담 결과에 따른 손실의 조기인식, 사업시행자 결손금의 이전, 손실에 대해 소득세에서의 세액공제 등의 방법 등임
- 손실의 조기인식은 사업시행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법인에 사업실패 시 손금산입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현재 「법인세법」 하에서 채권 등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sup>182)</sup>, 주식 등은 발행법인 파산 시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와 부도, 회생인가,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

182)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따라서 투자의 손금 조기 인식을 위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의 특례, 주식의 시가평가 또는 손상금액 인정 특례 등을 도입하는 것임
- 사업시행자 결손금의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발생시킨 이월결손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연결납세제도 또는 공동사업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것임
  - 이 방법은 사업시행자의 결손금을 법인인 주주의 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혜택을 주는 것임
  - 다만 이러한 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에 따른 손실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뒤의 법인세 회피 문제와 연계하여 고려가 필요함
    - 실제 사업성이 존재함에도 과도한 부채비용 또는 이자율을 이용해 결손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세제혜택을 위한 도덕적 해이이므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손실에 대해 소득세에서의 세액공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투자 시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 소득세에서의 공제를 허용하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하에서는 채권·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2013년 발행한 공모펀드투자(채권)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은 공제가 불가능함<sup>183)</sup>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한 개인에게 투자금의 손실이 확정되면 이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형식으로 공제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음
    - 다만, 기부금 및 사회성과연계채권 등과 상대적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투자목적이며 사회적 투자의 성격이 앞선 지출 또는 투자보다 약하므로 이보다는 낮은 수준의 공제율<sup>184)</sup>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183) 다만, 서울시메트로 9호선의 공모펀드는 금융기관의 보증이 설정되어 있으며, 해지시 지급금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채권손실과 이익의 상계는 가능하나, 이 공모펀드는 단일 채권투자이므로 상계할 다른 대상은 없다.

184) 현재 개인의 기부금 공제율은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초과는 25%이다.

- 다만, 사후적인 세제혜택은 민간투자시설의 사용료 인하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책 측면에서는 사전적인 세제혜택의 효과와 동일함
  - 사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효과를 실시협약에서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경우에는 사용료 인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민간의 사업수익률 및 위험회피 측면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 투자유인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
  - 사전적인 세제혜택을 실시협약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사후적인 세제혜택과 마찬가지로 사용료 인하 효과가 없음
  
- 민간투자사업 투자촉진을 위해 공모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고려<sup>185)</sup>해 볼 수 있으나 과거 사례를 볼 때 현실적인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정보 비대칭효과로 인한 부작용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 과도한 특혜가 이루어진다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 개인들에게 투자하도록 하여 투자의 기회를 모든 일반인들이 가져가므로 이러한 특혜 부여 비판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실제로 서울시 9호선 펀드의 발행결과를 볼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업에서 공모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은 일반 개인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판명됨
  -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이 채권시장의 미성숙 및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투자하는 것이 수익구조 면에서 유리한 점 때문에 발행건수가 저조<sup>186)</sup>한 것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사업의 공모 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제반여건이 요구됨
    - 수익성이 좋은 사업은 현행과 같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투자로 이루어질 것이고, 수익성이 좋지 않아 사모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만이 공모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것임

185) 이러한 세제혜택으로 폐지된 인프라펀드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다시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방안 연구』, 2014. 12., p. 196).

186) 기획재정부 · KDI한국개발연구원(2015), p. 233.

- 또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지방세에 대한 세제혜택은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현행 조세혜택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부분의 조사대상국가들은 지방세 수준에서의 조세혜택은 존재하였음
  - 우리나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를 각 지방정부 별로 재량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 사회성과연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

- SIB는 이제 막 태생하는 초기단계이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SIB 자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G8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투자TF(現,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GSG)에서는 사회적 임무를 유지하고 위험부담과 혁신을 위해 여러 개혁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제혜택이 포함되어 있음<sup>187)</sup>
- 영국이 내각사무처 인증을 통해 SITR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항목에 넣어 기존의 사회적기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세제혜택의 형태에서는 투자유인책으로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면제 및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SIB 운영기관은 SIB 투자자와 정부 간의 사실상 자금중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운영기관에 대한 법인세는 큰 유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금중개활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금조달활동에 대한 혜택이 필요함
    - 영국의 SITR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금조달활동에 대한 혜택으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본이득 과세이연 및 면세의 형태임

187)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Established under the UK's presidency of the G8), (2014), p. 40.

-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SIB에 대한 투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득 또는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어 개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고려할 수 있음
  - SIB의 대상사업은 대부분 자선단체 등의 사업과 유사하므로 기부금에 준하여 세액 공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세액공제율은 기부금보다 낮아야 함
    - 기부금은 기부 자체가 모든 재산적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며, SIB는 투자목적으로 향후 성과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유인을 촉진하더라도 기부금보다는 혜택이 낮아야 함
  
- 이외에 초기단계의 SI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과 개인 모든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고려할 수 있음
  - 한시적으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 또는 소득공제, SIB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등을 부여함

## 2. 과세의 합리화 유도

### 가.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와 관련된 문제

#### 1) BTL사업의 수익인식 방법의 명확화

- BTL사업 수익인식의 문제는 기부채납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볼 것인지 금융리스채권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BTL 운영 전체기간의 과세소득은 동일하나 기간수익의 인식 문제임
  - 예규에 따라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식하면 비용이 정액법 감가상각으로 균등하게,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면 비용인식 없이 채권상각에 따른 이익이 순액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됨

- 따라서 법인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어느 한 방법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되지만, 현행 회계기준 및 BTL사업의 실질 측면에서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일본의 경우 BTL형태에 대해 판매리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형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회계기준을 인정하고 있는데 IFRS 등은 건설에 따른 금융자산의 회수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분류한 예규를 폐지하고, 현행 회계기준을 인정하는 것으로 예규를 새로 회신하여 BTL실무에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2)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등을 이용한 법인세 회피 문제

### 가) BTO 사업의 후순위차입금

-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자율 시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는 실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시가로 주장하고, 과세관청은 전심절차에서 당좌대출이자율 및 위험프리미엄을 감안한 조정된 이자율을 시가로 주장하고 있음<sup>188)</sup>
- 일반적으로 후순위차입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제효과, 자본투자회수 제한의 회피, 신용보강 등을 목적으로 함<sup>189)</sup>
  - 이자비용 공제를 통해 법인세 효과를 누리고 (해당되는 경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과세를 회피함
  - 지분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함
  -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 유상감자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이자로 회수함
  - 선수위차입금에 대한 신용을 보강함

188) 이러한 이유로 인해 2014년 개정된 기본계획에서는 BTO 등의 사업시행에게 후순위와 관련된 조달금리 및 규모에 대해 합리적인 노력을 선언하고 있다(기본계획 제25조의2 제2항).

189) Jeffrey Delmon,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2nd edition, PPIAF & The World Bank, Wolters Kluwer, 2009., p. 78.

- 약정을 통해 지분보다 다양한 면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차입금은 위의 사유 중 법인세효과와 지분투자의 회수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으로 판단됨
  - 일반적인 유동화나 금융기관의 신용보강 목적인 후순위와는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선순위차입금은 해지시지급금<sup>190)</sup>을 통해 신용위험이 크게 경감되므로 신용보강의 의미는 크지 않음
    - 다만, 선순위차입금의 유동성위험 및 정부의 해지시지급금 미지급에 대한 위험 보강은 존재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선순위채권자들은 선순위차입금이 상환되기 전에 지분투자의 회수를 방지하도록 다양한 제약(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DSRA: debt service reserve account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약을 피하면서 투자회수를 위하여 후순위차입금을 발생시킴
    - 선순위대출 원리금 상환 이전에 배당 및 감자가 불가능하여 자본금투자에 대한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며, 배당을 위한 현금이 존재하더라도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어(회계상 결손)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sup>191)</sup>

190)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5, [별표 4]

구분	건설기간	운영기간
사업자귀책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sup>1)</sup>	좌동의 정액법 상각잔액 <sup>4)</sup>
비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민간투자자금 × (1 + 표준차입이자율 <sup>2)</sup> ) (A)	상동의 정액법 상각잔액과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현금흐름 <sup>5)</sup> 의 현재 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 <sup>6)</sup>
정치적 불가항력	기투입민간투자자금 × [1 + (A + B)/2]	
정부귀책	기투입민간투자자금 × (1 + 정상수익률 <sup>3)</sup> ) (B)	

- 주: 1)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차감  
 2) 건설기간 중 매년도 국채(5년만기)의 유통수익률의 연평균치를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를 가산  
 3) 실질수익률에 건설기간 중 실적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계산  
 4)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하되, 사업자귀책의 경우 후순위차입금(미지급이자 포함)과 자본금은 제외 (개정 2013. 5. 10)  
 \* 건설종료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불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5)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 불변기대수익의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으로 해지사유별로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  
 6) [상각잔액 × (1 - 잔여운영기간비율)] + [미래기대수익현재가 × (잔여운영기간 비율)]  
 7) 해지시점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  
 8)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귀책 외의 사유에 의한 해지시지급금이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보다 작을 경우 사업자귀책의 해지시지급금 적용

191) 기획재정부 · 한국개발연구원(2015), p. 203.

- 따라서 후순위대출은 주주 입장에서는 다른 사유와 더불어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면서 배당 등의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회수금액을 조기에 회수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효과만이 주목적으로 보임
  - 만약 선순위대출이었다면 해지시지급금 산정 시 대상이 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고 후순위를 사용한 것임
    -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에서도 합리적인 사업시행자라면 협약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지 않으며, 선순위채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협약상 재원조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후순위차입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sup>192)</sup>
  - 조세회피 의도가 아니며 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점은 법인세 납세자인 사업시행자의 측면이 아닌 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임
  - 주주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법인세 절감효과가 아니었다면 이자율이 낮은 선순위 대신에 고율의 후순위를 차입할 유인이 없음
    - 사업시행자의 이사회 등이 주주에 대한 수탁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거래를 제3자와 수행했다면 법인세 절감 이외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business judgement rule)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가 의문시됨

#### 나) BTL사업의 과다차입

- BTL사업은 정부지급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근거로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을 유사하게 맞추어 당기순이익(과세소득)을 0 또는 부(-)의 금액으로 만드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
  - 수익의 예측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효과를 위해 대부분의 BTL사업은 차입비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과세소득을 0 또는 부(-)의 금액에 수렴하도록 함

19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2014. 12, p. 54.

- 앞선 BTL사업 수익인식에서 발생한 쟁점도 과세소득에 발생구조에 따른 적합한 재무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임
- 대부분 BTL사업의 지분투자는 무수익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협약모델에서 지분투자는 원금수준에서 회수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BTL사업의 차입에 대한 법인세법상 과세에서 쟁점이 발생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음
  - 이는 BTL사업이 BTO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과 법인세 회피를 포착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 해결방안

-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법인세 절감(또는 회피)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과 같은 이자율에 대한 시가 적용 및 과소자본세제의 신설 또는 이자비용공제제한(earning stripping rule), 실질과세의 확장 또는 별도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이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후순위 등의 차입금 이자율에 대해 시가를 적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현행 방법과 더불어 공정차입비율을 신설하여 제한하는 것임
  - 이론상으로는 가장 적절하며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가장 작은 방법인데 이자율에 대한 시가 적용은 현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 되나 과소자본세제(공정비율 차입)에 대한 부분은 규정 신설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이전가격에 부채의 공정비율(즉, 과소자본세제)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가에 대한 다툼이 현재 조세쟁송으로 계속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는 또는 적정비율의 차입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에 따른 경정처분에 대한 다툼에서 이의 적법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음
- 두 번째 방법은 조정된 영업이익 대비 순이자비용공제액을 제한하는 방법임

- 이는 OECD BEPS Action 4의 이자비용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자·세금·감가상각비 차감전 이익(EBITA: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대비 10~30%의 고정비율 공제제한 및 그룹규정을 권고하고 있음<sup>193)</sup>
-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공공서비스 자산은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공부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BEPS 위험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고정비율 등의 효과를 감경하는 규정을 허용하고 있음<sup>194)</sup>
  - 실제 유럽의 PPP에 대해 가상적으로 25%의 공제율을 적용한 바, 평균 49~60%의 제3자 선순위이자비용이 불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배당제한기간(lock-up period)과 심지어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협약종료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함<sup>195)</sup>
- 그러나 OECD의 BEPS 위험(특히 국제조세회피 위험)은 낮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주주차입비용을 통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면 감경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한지는 의문임
  - 다만, 일반기업과 동일한 일반적 적용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목표 규정(targeted rule)이 적합함
- 영국은 이자공제제한의 의견수렴에서 공공혜택사업에 대한 제외규정 대신 그룹규정을 적용하면 PPP사업의 제3자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sup>196)</sup>

□ 세 번째 방법은 실질과세를 확장하여 적용하거나 별도의 조세회피방지규정을 두어 민

193)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p. 54.

194) OECD(2015), p. 39.

195) OECD, *Comments received on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4: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part 2-KPMG's comments, 11 February 2015, pp. 689-690.

196)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 검색일자: 2015. 12. 31.).

간투자사업의 금융비용에 적용하는 것임<sup>197)</sup>

- 이 방법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차입의 현황, 목적 및 이를 통한 조세절감효과를 다른 대안과 분석하여 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것임
  - 앞서 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후순위차입금은 법인세 절감효과와 지분투자에 대한 조기회수가 주 목적이나 후자는 주주 입장에서 관련된 것으로 주주와는 별개 실체인 사업시행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효과만이 목적임
- 예를 들어 MRG가 있는 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이 보장하는 선순위차입금 자금조달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자가 주주이면서 집합투자기구로 법인세법상 도관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순위차입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자를 공제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선순위차입과 동일한 조건이 요구되므로 기본계획 및 협약에서 후순위이자율 부인 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함
- 다만, 현행 실질과세 등이 거래의 실질이 없는 행위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데 반해, 이 방법은 거래의 실질이 있으나 거래가 조세회피 의도인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배 또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안에 대한 쟁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실질이 없는 행위가 아닌 실질이 존재하나 조세회피 의도를 가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

## 나.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

### 1) 공정한 경쟁시장을 위한 부가가치세 중립성

-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정부 및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면세하고 있음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소포우편물, 고속철도, 부동산임대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면세함<sup>198)</sup>

197) 이러한 방법의 채택 및 현행 운영의 분석은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나,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전체적인 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한한다.

- 또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지방공단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에 대해서도 면세함<sup>199)</sup>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과 유사하면서 동시에 정부 및 대행하는 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 예를 들어, 구간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또는 건설 후 민간에 양여할 예정인 제2경부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또는 중부고속도로와 경쟁관계에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사용료가 과세될 것이고 도로공사의 사용료는 면세됨
  - 물론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도로공사는 매입세액을 모두 비용으로 부담하나 이의 효과는 일치하지 않음
  - 동일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요금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투자비(면세사업의 경우 VAT포함) 수익률로 계산하면 요금은 동일하지만 매입세액의 부담과 환급시점의 기간 차이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더 불리함
    - 반면에 초기투자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정부부문이 불리할 수 있음

〈표 V-1〉 민간투자사업(과세)과 정부대행단체(면세)의 비교

	민간투자사업(과세) <sup>1)</sup>			도로공사(면세) <sup>1)</sup>		
	공급가액	VAT	소비자부담	거래금액	VAT	소비자부담
사용료(매출)	120	12	132	130	-	130
관리운영권부여(매입)	100	(10) <sup>4)</sup>		-		
기부채납(매출)	100	- <sup>3)</sup>		-		
건설비(매입)	100	(10)		110 <sup>2)</sup>		

주: 1) 이익을 10만큼 남긴다고 가정하며, 기부채납 시 가액은 총투자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2) 면세의 경우 VAT가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거래금액에 포함시킴.  
 3) 과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를 적용됨.  
 4) 관리운영권에 대한 VAT는 일반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기부채납 시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민간과 정부부문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과 정부 등의 부문에 대해

19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19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10.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쟁시장의 왜곡에 따른 정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은 EU Directive<sup>200)</sup> 등에서도 확인됨
- 대안으로는 민간투자사업을 정부 등과 동일하게 면세 적용하거나 정부 등의 부문을 민간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법 모두 가능함
  - 다만, 민간투자사업 부문을 면세하는 경우 기부채납단계에서 VAT 과세가 한 번 더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건설 시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대상에 포함시켜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적용은 민간투자사업뿐만 아니라 SIB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2) 민간투자사업에서 기부채납거래 및 부동산임대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 현행 기부채납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아 재화의 교환과 동일하게 과세되고 있음
  -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행위에 대해 과세되며, 주무관청은 관리운영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임대로 보아 과세되고 있음
  - 기부채납 후 운영권 수취에 대한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나 법원의 판단<sup>201)</sup>, 연구문헌<sup>202)</sup>에서 모두 일관되게 과세거래로 보고 있음
    - 기부채납은 일종의 교환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다시 제공받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
- 이러한 교환거래에서 과세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사업이 면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납세협력비

200) EU Directive 2006/112/EC Article 13 & Annex I.

20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판결 등.

202) 이종교, 「기부채납과 과세문제 - 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5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년 5월, pp. 300~302; 전병욱,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와 법』 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p. 109.

용이 발생함

- 사업시행자의 운영사업이 철도 같은 면세사업이라면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모두 공제되지 않음
  - 이러한 문제는 2006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부 등이 면세용역 제외 범위에 부동산임대업을 포함시키면서 발생함
- 앞선 사례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철도를 운영하고 요금을 수취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을 두 번 부담하면서 불공제되고 이는 총투자비에 포함되어 사용료에 반영됨

〈표 V-2〉 민간투자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면세 <sup>1)</sup>			과세 <sup>1)</sup>		
	거래금액	VAT(불공제)	소비자부담	거래금액	VAT	소비자부담
사용료(매출)	130		130	110	11	121
관리운영권부여(매입)	110	- <sup>2)4)</sup>		100	(10) <sup>4)</sup>	
기부채납(매출)	100	-		100	-	
건설비(매입)	110	- <sup>2)</sup>		100	(10)	

주: 1) 이익을 10만콤 남긴다고 가정하며, 기부채납 시 가액은 총투자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2) 면세의 경우 VAT가 비용으로 인식되므로 거래금액에 포함시킴.  
 3) 과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됨.  
 4) 관리운영권에 대한 VAT는 일반적으로 운영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되지만 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기부채납 시 과세되는 것으로 가정함.

- 이러한 불공제 근거는 건설과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설정(부동산임대)과 면세사업 운영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때문임<sup>203)</sup>
- 이전 기부채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 여부만을 심리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해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현행 시행령 신설 이전에 기부채납 시 포함되는 용역 중 면세용역을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대법원 견해<sup>204)</sup>와 시행령 신설 이후 기부채납 그 자체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

203) 조세심판원 2012. 4. 4. 2012서0165 결정 등.

20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9247 판결.

을 수 있다는 하급심 견해<sup>205)</sup>가 존재함

-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운영사업과 별도로 기부채납행위를 하나의 과세사업으로 보는 방안과 기부채납으로 인한 정부의 부동산임대 공급에 대해 면세로 규정하는 방안임
  -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설정을 과세대상 교환거래로 본다면 기부채납은 별도의 과세거래로 보고, 건설매입세액은 기부채납 매출세액에 대응하여 공제하는 것임
    - 기부채납행위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행위라는 법원의 판단 및 현행 시행령에 부합함
    - 다만, 현행 질의회신·심판결정 등에 반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함
  - 다른 방법으로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인해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면세하는 방법이 존재하나 부작용이 존재함
    - 먼저 부동산임대 중 기부채납만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하지 않는 기부채납행위에서는 정부가 기부채납에 따른 매입세액이 관리운영권 부여라는 면세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가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어 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부채납행위에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부채납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영국은 준공시점에 정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지 않으면서 사업시행자는 과세선택권을 가지며, 일본은 기부채납 시 과세사업으로 보거나 BTL 형태에 대해서는 장기할부판매특례로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렇게 되려면 위의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과세되어야 VAT 중립성에 일관성이 있음
    - 영국 등의 EU에서는 PPP를 이용하는 것과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조세 중립성을 위해 과세 선택권을 사용하고 있음<sup>206)</sup>

205) 대구지방법원 2014. 8. 11. 선고 2013구합11033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로 인해 원고가 기부채납행위를 수행하지 않아 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기술하였을 뿐 이러한 논리로 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 순수하게 일본(영국도 유사함)과 같이 BTL방식에 대해 실질에 따라 기부채납 시 VAT를 과세하지 말고 장기할부판매로 보는 방안도 존재하나<sup>207)</sup> 현행 법제와 판례 등의 관점 및 적용범위의 설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채납거래 자체에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교환거래인 기부채납을 과세거래로 보는 현행 실무와 맞지 않으며 조세형평성을 위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
  
- 한편, BTL사업시행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함
  - 과거 이를 누락하여 현재 불복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심에서 실질 및 명세서제출 취지에 따라 미제출가산세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2심에서는 조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만약 조정이 성립되어 소취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납세자는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취소를 주장할 수 없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
  - 부동산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임대이며 실질적으로는 건설대금 회수로 보는 법원 및 해외 사례(일본 등)를 비추어 볼 때 BTL사업에 대해 명세서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입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06) KPMG, *Summary of Final Report on the Expert Opinion "PPP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VAT Refund System,"* March 29, 2005, p. 13.

207) 이준규·박재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15-4, 한국세법학회, 2010. 4., p. 31.

## 참고문헌

-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2011. 5.
- 경기도, 『‘해봄’ 프로젝트(경기도 SIB방식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운영기관 모집 공고』, 경기도공고, 제2015-1275호, 2015. 12. 22.
- 고용노동부, 『2015년도 사업적기업 인증 업무메뉴얼』, 2015. 3.
- 국토교통부, 「도로 민간투자 확대로 경제활성화 지원」, 보도자료, 2016. 2. 21.
- 기획재정부,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보도자료, 2015. 4. 7.
- \_\_\_\_\_, 「민간건설사가 적극 참여하는 민자사업 추진키로」, 보도자료, 2015. 10. 22.
- \_\_\_\_\_,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추진하기로」, 보도자료, 2015. 5. 14.
- \_\_\_\_\_,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015. 4. 8.
- \_\_\_\_\_,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2015. 4. 20.
-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 1.
- 김갑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용방안: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자본시장연구원, 2012. 7.
- 류시균, 「미국 SOC 민간투자의 현황 및 시사점」,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09. 12.
- 박종철, 「일본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PFI법) 개정사항 검토」, 『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서울시, 「서울시, 아시아 최초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6. 2. 21.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공동생활가정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2015. 4.
- 이재광·서상목·문진수·강선영, 「경기도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 방안」, 『정책연구』, 경기연구원, 2013. 3.
- 이종윤·김남용, 『민간투자사업 Hand Book』, 북랩, 2014.
- 이중교, 「기부채납과 과세문제－BTO방식과 BTL방식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

- 53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5.
- 이준규·박재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15-4, 한국세법학회, 2010. 4.
- 전병욱,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와 법』 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 조혁중,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이해」, 교보생명, 2010. 11.
- 팬임팩트코리아, 『사회성과연계채권 소개 및 사례』, 2016. 1.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2015.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4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2014. 12.
- \_\_\_\_\_,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 활성화방안 연구』, 2014. 12.
-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Guidelines Overview*, December 2008.
- Benevolent Society, *The Benevolent Society Social Benefit Trust No 1*, August, 2013.
- Cabinet Office,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Guidance Concerning the Accreditation Of Social Impact Contractors*, January 2016.
- Cox, Benjamin R., “Financing homelessness prevention programs with social impact bonds,” *Review of Banking & Financial Law*, Vol. 31, 2011-2012.
- Delmon, Jeffrey,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2nd edition, PPIAF & The World Bank, Wolters Kluwer, 2009.
- Demasi, Deborah A. & Kenneth B. Weiner, *International Project Financing* 4th edition, Juris, 2012.
- Edwards Jr, Robert H., Randall F Hafer and Mark J Riedy,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Law Review*, Law Business Research, March 2015.
-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 December 2012.
- \_\_\_\_\_,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jects: 2014 summary data*, December 2014.
-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Private Finance Initiative*, Seventeenth

- Report of Session 2010.12, August 2011.
- Infrastructure Australia, *Infrastructure Tax Loss Incentive*, February 2014.
- \_\_\_\_\_, *Designated Infrastructure Project Guidelines*, October 2014.
- IRS, *New Markets Tax Credit*, May 2010.
- Kimbrell, Anna R., “Social Impact Bond: Can Private Investors Cure Society’s Ills and Make a Profit?,” *Moral Cents*, Vol. 3 Issue 1, Winter/Spring 2014.
- KPMG, *Summary of Final Report on the Expert Opinion PPP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VAT Refund System*, March 29, 2005.
- OECD, *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Action 4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 \_\_\_\_\_, *Comments received on Public Discussion draft BEPS Action 4: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part 2*, 11 February 2015.
- \_\_\_\_\_,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2008.
- Practical Law Finance,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ssues and Considerations*, Practical Law Finance, 2013.
- Razaki, Khalid A., Raymond A. Pollastrini, Robert J. Moreland, *Privatization of Infrastructure Assets: Financial Structures, Participant Motivations, and Lessee Tax Benefits*, Columbia College, 2013.
- Semple, Abby & Laura Turley, *Public-Private Partnership Health Check: Managing partnerships during their lifetim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Note, February 2013.
- Smith, Gwen Chisholm, *Legal Research Digest 45*,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of the National Academies, July 2014.
- Social Impact Investment Taskforce(Established under the UK’s presidency of the G8), *Impact Investment: The Invisible Heart Of Markets*, 15 September 2014.
- Social Ventures Australia, *Information Memorandum Newpin Social Benefit Bond*,

April 2013.

UNECE, *Introduction to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2.

内閣府, 平成22年度 P F I 関連支援措置等, 平成22年3月31日.

内閣官房長官, P P P / P F I 推進タスクフォースの開催について, 平成 28 年 1 月 19 日.  
 ソーシャル・インパクト・ボンド (SIB) を活用した大阪独自の生活困窮者自立支援  
 のための新たな仕組みづくり研究会, 資料 2 “大阪しあわせネットワーク”につ  
 いて ~オール大阪の社会福祉法人による社会貢献事業, 平成27年12月25日.

〈온라인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15. 11. 1.  
 ~ 2016. 3. 4.)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검색일자: 2016. 3. 4.)

경기도의회(<http://www.ggc.go.kr/main>, 검색일자: 2016. 3. 4.)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검색일자: 2015. 11. 1.~ 2016. 3. 4.)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검색일  
 자: 2015. 11. 1. ~ 2016. 3. 4.)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검색일자: 2015. 11. 1.~ 2016. 3. 4.)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검색일자: 2016. 3. 4.)

서울특별시의회(<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01.jsp>, 검색일자: 2016.  
 3. 4.)

팬임팩트코리아(<http://panimpact.kr/mission/>, 검색일자: 2016. 3. 4.)

한국개발연구원(<http://www.kdi.re.kr/>, 검색일자: 2015. 11. 1.~ 2016. 3. 4.)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http://ministers.treasury.gov.au/>, 검색일자:  
 2016. 3. 7.)

Australia Taxation Office(<https://www.ato.gov.au/>, 검색일자: 2016. 3. 7.)

Cabinet Office(<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검색

일자: 2015. 12. 31.)

Center for Social Impact Bonds([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home](https://data.gov.uk/sib_knowledge_box/home), 검색  
일자: 2015. 12. 31.)

Enterpriser([http://www.enterprisecommunity.com/low-incom-housing-fax-credit-po  
licy](http://www.enterprisecommunity.com/low-incom-housing-fax-credit-policy), 검색일자: 2016. 2. 25.)

HM Revenue & Custom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검색  
일자: 2015. 12. 31.).

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  
-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tax-deductibility-of-corporate-interest-expense-consultation),  
검색일자: 2015. 12. 31.)

IBFD(<http://www.ibfd.org/>, 검색일자: 2015. 11. 1. ~ 2016. 3. 4.)

Infrastructure Australia(<http://infrastructureaustralia.gov.au/>, 검색일자: 2016. 3. 4.)

Infrastructure UK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frastructure-uk>, 검색일자:  
2015. 12. 31.).

National Counci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http://www.ncppp.org/ppp-basics/types-of-partnerships/>, 검색일자: 2016. 3. 4.).

Private Finance Initiative Promotion Corporation of Japan(<http://www.pfipcj.co.jp>,  
검색일자: 2016. 3. 4.).

Social Venture Australia  
(<http://www.socialventures.com.au/work/social-impact-bond-case-studies/>,  
검색일자: 2016. 3. 7.)

UNESCAP(<http://www.unescap.org/>, 검색일자: 2015. 12. 31.)

World Bank(<http://www.worldbank.org/>, 검색일자: 2016. 3. 14.)

Worldbank PPPIRC(<http://ppp.worldbank.org/public-private-partnership>, 검색일자:

2016. 3. 4.).

内閣府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http://www8.cao.go.jp/pfi/>, 검색일자: 2016. 3. 4.).

日本 PFI・PPP協會(<http://www.pfikyokai.or.jp/>, 검색일자: 2016. 3. 4.).

日本財団(<http://www.nippon-foundation.or.jp>, 검색일자: 2016. 3. 4.).

国税庁(<https://www.nta.go.jp/>, 검색일자: 2016. 3. 4.)

세법연구 15-09  
민관협력사업 과세체계 국제비교 연구

---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전병목·정 훈·신영효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26-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